

시민의 편에서 아산과 대화하다 아산시 시민옴부즈만



시민의 편에서 아산과 대화하다
아산시 시민옴부즈만

발간사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이해하고 적극 지원해 주신 아산시 장님을 비롯한 아산시 공무원, 아산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고 함께 하기 위해 찾아주신 아산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20년 시의회 의결을 거쳐 5월에 제정되었고, 조례 규정의 절차에 따라 위촉된 아산시 시민옴부즈만은 2021년 1월 1일부터 충청남도 시·군에서는 최초로 상근 활동을 시작하여 어언 만 1년이 되었습니다.



아산시 시민옴부즈만 홍보·안내 활동·현장 상담에 집중

아산시 시민옴부즈만은 초기 대시민 홍보활동에 역점을 두고, 아산시 전광판 홍보, 언론매체 홍보, 아산시홈페이지 첫화면(민원)에 안내를 위한 홈페이지 수정작업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읍면동 고충민원 상담의 날”을 2월에 기획 준비하여 3월부터 읍·면·동 17개소를 순회하면서 시민옴부즈만에 대한 홍보 안내 및 고충민원 현장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산시 시민옴부즈만은 짧은 운영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대시민 홍보활동으로 인한 시민들의 적극 참여, 아산시 의회의 관심과 협조, 아산시의 적극 지원 속에서 2021년 총 68건의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였습니다. 접수 유형으로 분류하면 방문 27건, 홈페이지와 이메일 접수 15건, 우편 및 팩스 2건, 읍·면·동 현장 상담 24건으로 다양하게 접수되었고, 전화 문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신청 분야는 주택건축 분야 22건, 도로교통 17건, 산업농림 10건, 일반행정 9건, 복지노동 4건, 재정세무 3건, 기타 3건 으로 주로 주택건축,도로교통

분야의 고충이 많았으며, 시민 생활과 관련한 전반적인 분야에서 고충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고충민원 처리 현황은 시정권고·의견표명이 9건, 합의조정이 4건, 상담해결 8건, 심의안내가 39건, 이송·각하 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란?



시민옴부즈만, 특히 지방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은 아직 초기여서 시민들에게는 많이 생소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시민옴부즈만이란 “불합리하고 부당한 행정으로 발생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비사법적 시민권익보호제도”로서 한마디로 말하면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근거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권익구제 기능을 지방에서 시행” 하는 제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옴부즈만제도는 행정소송, 행정심판과 달리 시민의 경제적 부담 없이 높은 접근성과 신속한 업무처리로 행정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해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아산시 시민옴부즈만은 부당하고 불합리한 행정과 제도로 발생하는 시민의 고충에 대하여 1차로 시민의 어려운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상담, 조사 처리를 통하여 시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제도의 개선을 통한 시민의 권익 보호에 충실히 임할 것입니다.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통하여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억울함이나 답답함을 해소하고, 권익구제를 통하여 시민들이 행복을 조금이라도 배가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시민들의 시민옴부즈만 제도 이해를 돕고자 운영 상황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2022. 2.

아산시 시민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대표위원 신동택, 이상득

Contents

I. 시민옴부즈만 구성·운영

1. 시민옴부즈만 도입 배경 및 추진 경과	09
2. 시민옴부즈만 소개	11
3. 시민옴부즈만 기능	12
4. 고충민원 처리 절차	14
5. 시민옴부즈만 제도 홍보·안내	20

II. 시민옴부즈만 활동현황

1. 찾아가는 고충민원 상담의 날 운영(읍면동 순회)	29
2. 고충민원 현장 방문 활동	44
3. 시민옴부즈만 벤치마킹	49
4. 지방옴부즈만 활성화 전략회의(국민권익위원회)	51
5. 지방옴부즈만 활성화 충청권 세미나	52
6. 국민권익위원회 협력 활동	55

III. 고충민원 처리결과

1. 2021년 고충민원 현황	61
2. 시정권고 사례	63
3. 의견표명 사례	67
4. 합의조정 사례	102
5. 상담해결 사례	120
6. 심의(상담)안내 사례	122

IV. 참고자료

1. 보도자료	137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143
3.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49
4.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54
5. 아산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156
6.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운영 현황	159

I. 시민옴부즈만 구성·운영

1. 시민옴부즈만 도입 배경 및 추진 경과
2. 시민옴부즈만 소개
3. 시민옴부즈만 기능
4. 고충민원 처리 절차
5. 시민옴부즈만 제도 홍보·안내



I. 시민옴부즈만 구성·운영

1

시민옴부즈만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 옴부즈만(Ombudsman)이란?

스웨덴어로 대리인이라는 뜻이며, 시민의 대리인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을 접수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 또는 비사법적 시민권의 보호제도임.

□ 도입배경

행정의 복잡·다양화 등으로 시민의 권리 침해, 불편, 부담에 대한 시정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아산시와 그 소속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행정행위(부작위 포함)와 관련한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시민의 대리인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시정 견제·감시·통제 기능을 수행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시민옴부즈만 제도 도입

□ 옴부즈만 운영의 법적 근거

지방옴부즈만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제37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제39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제41조(고충민원의 조사), 제46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제54조(권익위원회 상호 관계), 제77조(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 제81조(교육과 홍보 등), 제91조(과태료)에 따라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처리와 행정 제도개선 등의 역할 수행 (국민권익위원회와 동일한 기능과 역할 수행)

□ 추진경과

- 2020. 4. 3. 아산시의회 제220회 임시회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원 발의
- 2020. 4. 20. 아산시의회 제220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 ‘조례’ 통과
- 2020. 4. 24.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조례’ 의결
- 2020. 5. 14.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2020. 8. 11. 아산시의회 제4차 의원회의 보고(옴부즈만 추천위원회 위원 2명 추천)
- 2020. 9. 3. 아산시의회 제2차 본회의 의원추천 의결
- 2020. 9. 8. 시민옴부즈만 공개모집 공고
- 2020. 10. 27. 시민옴부즈만 추천위원회 개최
- 2020. 12. 2. 아산시의회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가결
- 2020. 12. 27. 아산시 초대 시민옴부즈만 (이상득, 신동택) 위촉
- 2021. 1. 1. 아산시 시민옴부즈만실 개소
- 2021. 10. 5. 상반기 아산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공표

2

시민옴부즈만 소개

□ 아산시 제1대 시민옴부즈만(2021. 1. 1. ~ 현재)

(공동대표) 시민옴부즈만 신동택

- 위촉일: 2020.12. 27.
위촉기간: 2021.1. 1.~ 2022.12.31.
- 임 기: 2년(1회 연임)
(「부패방지권익위법」제33조 위원 임기 4년)
- 주요경력
前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 근무일: 월·화·수



(공동대표) 시민옴부즈만 이상득

- 위촉일: 2020.12. 27.
위촉기간: 2021.1. 1.~ 2022.12.31.
- 임 기: 2년(1회 연임)
(「부패방지권익위법」제33조 위원 임기 4년)
- 주요경력
前 아산시 공무원
- 근무일: 수·목·금



※ 시민옴부즈만은 독립기구로 업무수행

옴부즈만 사무기구 : 감사위원회(조사팀) / 지원인력(공무원) 1명

□ 주요기능

- 지방옴부즈만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내지 제54조, 제77조 내지 제81조, 제91조에 따라 **고충민원을 처리(국민권익위원회와 동등한 권한 부여)**
-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고충민원 처리**
-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지방옴부즈만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상호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상호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는 경우 상호 간 이에 협조하여야 함**
- 지방옴부즈만은 다수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중앙차원의 법·정책·제도 사안 중 **국민권익위원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력을 받을 수 있음**(「부패방지권익위법」 제54조)
- 지방옴부즈만이 고충민원 조사와 관련한 업무수행을 방해·거부 또는 기피, 지연시킨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패방지권익위법」 제91조 제3항)

□ 옴부즈만 제도의 장점

행정심판, 행정소송과 달리 신속한 업무처리와 시민의 접근성이 높아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하고 의회 기능을 보강해주며, 경제적 부담이 없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해주는 장점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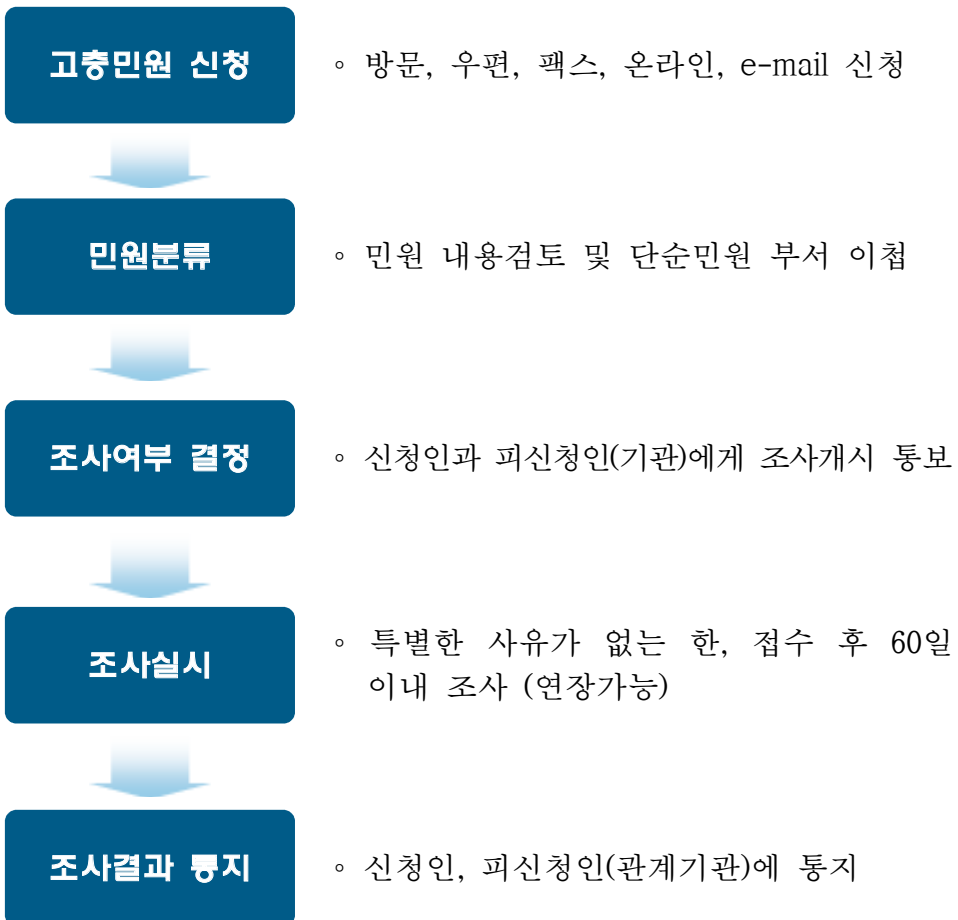
□ 옐부조만,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도 비교

구분	옐부조만	행정심판	행정소송
목 적	위법·부당하거나 소극 행정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불편·부담을 받은 경우 권익구제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행정감독	행정작용에 의하여 침해된 국민의 권익구제
성 격	비쟁송제도	쟁송제도	쟁송제도
기 간	제한없음	행정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범 위	위법·부당한 처분(사실행위) 소극적 행위, 불편·부담 등	위법·부당한 처분,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행정의 적법성 유무 (재량권 일탈·남용포함)
접근성	접근성 높음	행정소송보다 접근성 용이	접근성 매우 어려움
비 용	무료	행정소송보다 경제적 부담이 적은 편	경제적 부담 높음
구속력	언론공표, 의회 보고 등 간접강제로 실질적 구속력	기속력 (행정청에 대하여 구속력 인정)	기판력 (법원, 행정청, 국민에 대하여 인정)

□ 고충민원 정의

- 아산시(시 출자·출연 공기업, 출연기관 등 소속기관 포함)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 고충민원 처리절차



□ 고충민원 신청

○ 방문접수, 팩스, 우편: 아산시 시민로 456 (아산시청 본관 1.5층)

- E-mail: kty0964@korea.kr

- 팩스: 041)540-2017 (팩스 신청 시 사무실 확인 전화 요망)

※신청서 서식은 아래 아산시청,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

○ 온라인접수

- 아산시청 홈페이지 > 민원 > 시민옴부즈만 > 고충민원 신청 안내

-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 참여마당 > 시민옴부즈만 > 고충민원 신청 및 처리 안내

(문의전화: 041) 540-2243, 530-6232, 6233)

[아산시 홈페이지 시민옴부즈만 안내 화면]

[illegible]

영령한 세상 아산시 시민과 함께 합니다.
 

고충민원 신청 및 처리 안내

총>침여마당>시민옴부즈만>고충연월 신청 및 처리 연내

④ 교충민원에란?

- 시민 문화프로그램 소개
- 고용연원 신청 및 처리 연례
- 고용연원 사례
- 연원출발동행
- 운영상황공표

시민감사관 참여법

- 개요, 현황
- 제보 및 건의

익명신고
(검찰·경찰·국세청·노동부·부동산부처)

공무원보조직신고

채용비리신고

④ 교충민원에란?

圖 1 試驗裝置

보: 「전원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일반인민(법정민원 제외)인 건대면인 생활발전 등 기타면(원)은 자와

⑤ **고충민원 제외대상**

- 미성년자와 관련한 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미려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
- 음주운전과 관련한 법률을 담당하는 조국 및 사원의 근무내용에 관한 사항
- 음주운전의 형량에 관한 사항
- 탈세, 재탈, 동업 피과, 회계장권 권리장전제 관련 사항
- 도 일출상부처의 민원을 제출하여 이의 결정된 사항
- 행정안전, 재원 등 모든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정해 중인 사항
- 시민단체의 권리주제 또는 개인과 사생활에 관한 사항

□ 민원분류 및 조사여부 결정

○ 시민옴부즈만 직무 범위 및 권한

관할 범위	직 무
· 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 · 시가 출자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개인	· 신청인의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 · 스스로의 발의에 따른 집단민원 중재·조정 및 감사청구 · 시정에 대한 감시 및 비위의 시정 등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권고 ·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표명 · 권고, 의견표명 등에 대한 내용의 공표 ·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정·중재

○ 고충민원 제외 대상

- 시의회에 관한 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
- 옴부즈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 및 직원의 근무내용에 관한 사항
- 옴부즈만의 행위에 관한 사항
- 판결, 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 충청남도 및 중앙부처에 민원을 제출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
-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조사실시

- 고충민원의 조사는 당사자의 주장내용, 사실관계 및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
- 관계 행정기관 등에 고충민원 신청서 사본을 송달하고 설명 또는 관련자료·서류 등 제출 요구 및 실지조사 병행

□ 조사결과 통지

시정권고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

의견표명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

조정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합의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

제도개선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조례 그 밖의 정책·제도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단체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

심의안내

신청인의 민원과 관련한 행정절차 또는 제도를 설명하거나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안내를 하여 처리한 경우

이송 · 각하

고충민원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시의회에 관한 사항 등에 해당하여 각하 또는 이송하는 건

기각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41조에 따라 처리한 경우

취하

신청인이 시민옴부즈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한 경우

□ 시 홈페이지 및 각종 매체 게재

○ 미디어보드 활용 38개소, 시청 로비 DID 모니터 활용 홍보

(아산시청 홈페이지)



(시청 내 미디어보드)



(시청 로비 DID모니터)

□ 홍보 리플렛 제작 및 게시

- 게시위치: 시 청사 민원실,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산하기관 민원실
- 제작수량: 10,000부
- 규 격: A4





시민옴부즈만 소개

① 옴부즈만이란?

시민의 대리인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을 접수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 또는 비사법적 시민권익 보호제도입니다.

② 시민옴부즈만이 하는 일

- 아산시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 고충민원 관련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고충민원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는 권고 또는 의견표명
- 옴부즈만이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
-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및 상담



고충민원 소개

①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일반민원(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생활불편 등 기타민원)은 제외

② 고충민원 제외대상

- 아산시의회에 관한 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
- 옴부즈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 및 직원의 근무내용에 관한 사항
- 옴부즈만의 행위에 관한 사항
- 판결, 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
- 도 및 중앙부처에 민원을 제출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
-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사인간의 권리 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고충민원 해결

① 고충민원 처리절차



② 고충민원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아산시 시민로 456, 아산시청 1.5층
감사위원회 시민옴부즈만실
- TEL: 041-540-2243

③ 고충민원 신청대상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은 분

□ 시민옴부즈만 소개



참여마당

시민 옴부즈만 소개

▶ 참여의당 ▶ 시민옴부즈만 ▶ 시민 옴부즈판 소개

시민옴부즈만

- 시민 음부즈먼 소개
- 고충민원 신청 및 처리 안내
- 고충민원 사례
- 언론홍보 등
- 운영상황 공표

시민감사관 참여방

- 개요, 현황
- 제보 및 건의
-
- 익명신고
(갑질신고·제도가선 부조례)

공무원부조리신고

채용비리신고

☞ 옴부즈만(Ombudsman)이란?

스웨덴어로 대대인이라는 뜻이며, 시민의 대대인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을 접수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고 필요 한 경우 사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해 엄밀한 사실 또는 비사법적 시민권의 보호제도입니다.

☞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이상득



시민운동부조단
신동택
신동혁

☞ 옴부즈만 운영 법적근거

□ 고충민원 신청 안내

참여마당

고충민원 신청 및 처리 안내

홈 > 참여마당 > 시민옴부즈만 > 고충민원 신청 및 처리 안내

시민옴부즈만

- 시민 옴부즈만 소개
- 고충민원 신청 및 처리 안내
- 고충민원 사례
- 언론홍보 등
- 운영상황 공표

시민감사관 참여방

- 개요, 현황
- 제보 및 건의

익명신고 (갑질신고·제도개선·부조리)

공무원부조리신고

채용비리신고

공익신고

 익명 신고	 공무원 부조리신고
 공직자윤리법 관련자료	 청렴교육 관련자료
 청탁금지법 관련자료	 제보 및 건의

☞ 고충민원이란?

아산시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 시에서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 일반민원(법정민원, 결의민원, 건의민원, 생활불편 등 기타민원)은 제외

☞ 고충민원 제외대상

- 아산시의회에 관한 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
- 옴부즈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 및 직원의 근무내용에 관한 사항
- 옴부즈만의 행위에 관한 사항
- 판결, 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 도 및 중앙부처에 민원을 제출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
-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고충민원 신청 방법

- 방문: 시청(본관) 1.5층 감사위원회 시민옴부즈만실
- 우편: 아산시 시민로 456(아산시청 1.5층) 감사위원회 시민옴부즈만실
- 팩스: 041-540-2017
- 온라인: 하단의 게시판에 글쓰기를 통한 신청(본인인증을 통한 신청으로 게시글은 작성자와 담당자만 볼 수 있음)
- e-mail 신청: 아래 신청서 다운로드해서 작성하신 후 이메일(kty0964@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041-540-2243, 041-530-6232, 6233

☞ 고충민원 신청서식 내려받기

□ 고충민원 신청(게시판)

⊕ 고충민원 처리 절차

고충민원 신청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e-mail 신청
민원분류	내용검토 및 단순민원 부서 이첩
조사여부 결정	신청인과 피신청인(기관)에게 조사개시 통보
조사실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 후 60일 이내 조사 완료(연장가능)
조사결과 통지	신청인, 관계기관에 통지

총 14 건 (1/2페이지)

번호	성명	제목	등록일	조회
14	김○균	본 게시물은 비공개 글입니다.	2022-02-24	0
13	김○래	본 게시물은 비공개 글입니다.	2022-02-01	2
12	이○주	본 게시물은 비공개 글입니다.	2022-01-17	8
11	백○숙	본 게시물은 비공개 글입니다.	2021-10-11	3
10	장○영	본 게시물은 비공개 글입니다.	2021-09-01	3
9	유○성	본 게시물은 비공개 글입니다.	2021-08-11	1
8	이○자	본 게시물은 비공개 글입니다.	2021-08-01	1
7	김○선	본 게시물은 비공개 글입니다.	2021-07-30	1
6	박○구	본 게시물은 비공개 글입니다.	2021-07-26	1
-	-	-	-	-

Ⅱ. 시민옴부즈만 활동현황

1. 찾아가는 고충민원 상담의 날 운영(읍면동 순회)
2. 고충민원 현장 방문 활동
3. 시민옴부즈만 벤치마킹
4. 지방옴부즈만 활성화 전략회의(국민권익위원회)
※ 아산시 시민옴부즈만 우수사례 발표
5. 지방옴부즈만 활성화 충청권 세미나
※ 아산시 시민옴부즈만 주관
6. 국민권익위원회 협력 활동



II. 옴부즈만 활동현황

1

찾아가는 읍면동 고충민원 상담의 날 운영(읍면동 순회)

가. 기획안

2021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 운영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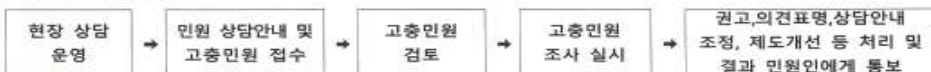
- 읍면동 대상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 운영으로 시민의 고충 및 애로사항 등을 상담·처리하여 시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 신뢰도 확보를 위한

I 추진방향

- 17개 읍·면·동 현장 순회 방문을 통한 고충민원 상담 창구 운영
- 시민고충 및 애로사항 해소를 통해 소극행정 개선 및 적극행정 전파
- 현장 순회 고충민원 상담을 매개로 옴부즈만 역할 대시민 적극 홍보

II 추진계획

- 기 간 : 3월 ~ 12월 (월 2회 격주 운영)
- 장 소 : 17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회의실 등
- 일 시 : 월 2회(격주) 수요일 오후 2시 ~ 5시
- 상담대상 : 아산시민으로서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권리를 침해받거나 불편, 부담을 받으신 분
- 운영내용 : 읍면동별 1회 고충민원 현장상담 운영(일정 추후 알림)
- 아산시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상담 및 조사·처리
- 운영방법



III 행정사항

- 읍면동 협조사항 :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 운영 시 상담장소, 홍보 안내, 상담신청 등 협조
- 전 부서 협조사항 : 해당 부서 관련 고충민원 등을 읍면동에서 상담·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

나. 공문발송

「더 큰 아산, 행복한 시민」



아 산 시 시 민 움 부 즈 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1 읍·면·동 찾아가는 시민움부즈만 운영 알림

1. 시민움부즈만-8(2021.1.28.)호와 관련입니다.
 2. 시민의 고충을 현장에서 상담·처리하고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읍·면·동 대상 찾아가는 시민움부즈만을 운영할 예정이오니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일정및장소: 은양4동(3.3.(수)), 영인면(3.17.(수)), 염치읍(3.31.(수)), 온양1동(4.14.(수)), 배방읍(4.28.(수)) 오후 2시~5시(행정복지센터 회의실 등)
- 나. 대 상: 아산시민으로서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권리를 침해 불편부담을 받으신 분
- 다. 운 영 내 용: 시민움부즈만 2명, 담당자 1명이 해당 지역주민들의 고충민원을 상담·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청식으로 고충민원 접수하여 조사·처리
- 라. 협조사항 (관련 유선협의)
- 고충민원 상담실(회의실 등) 협조
 - 주민홍보 안내 및 상담 예약 접수 협조
 - led전광판 송출 홍보, 배너 홍보, 이동장협의회 등 사전홍보 안내
- 마. 문 의: 아산시 시민움부즈만실(☎041-540-2243)

붙임 1. 2021 읍·면·동 찾아가는 시민움부즈만 운영 일정 1부.

2. led전광판 송출 안내 문구 1부. 끝.

아산시 시민움부즈만



수신자 아산시감사위원회위원장

시민움부즈만 2021.2.8

신동백

시행 시민움부즈만-14 (2021. 2. 8.) 접수

두 31512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온천동)

/ <http://www.asan.go.kr/>

전화번호 041-530-6233 팩스번호 041-540-2017 / sdtjij@gmail.com

/ 대국민공개

「더 큰 아산, 행복한 시민」



아 산 시 시 민 움 부즈 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1 읍·면·동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 운영 알림

1. 시민옴부즈만-8(2021.1.28.)호와 관련입니다.
2. 시민의 고충을 현장에서 상담·처리하고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읍·면·동 대상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을 운영할 예정이오니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일 정: 온양2동(5.12.수), 온양3동(5.26.수), 음봉면(6.9.수), 선장면(6.23.수),
오후 2시~5시(행정복지센터 회의실)
- 나. 대 상: 아산시민으로서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권리를 침해 불편부담을 받으신 분
- 다. 운영내용: 시민옴부즈만 2명, 담당자 1명이 해당 지역주민들의 고충민원을 상담·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정식으로 고충민원 접수하여 조사·처리
- 라. 협조사항 (관련 유선협의)
 - 고충민원 상담실(회의실 등) 협조
 - 주민홍보 안내 및 상담 예약 접수 협조
 - led전광판 송출 홍보, 배너 홍보, 이통장협의회 등 사전홍보 안내
- 마. 문 의: 아산시 시민옴부즈만실(☎041-540-2243)

붙임 1. 2021 읍·면·동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 운영 일정 1부.

2. led전광판 송출 안내 문구 1부, 끝.

아산시 시민옴부즈만



수신자 아산시감사위원회위원장

시민옴부즈만 2021.4.12.

신종택

시행 시민옴부즈만-26 [2021. 4. 12.] 접수

우 31512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온천동) / <http://www.asan.go.kr/>

전화번호 041-530-6233 팩스번호 041-540-2017 / sdtjji@gmail.com / 대한민국개

다. 보도자료

1. 아산시,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 운영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시민의 권익 보호·구제를 위해 오는 3월3일부터 '읍면동 대상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17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운영된다.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고충민원을 현장에서 상담 받을 수 있으며, 단순 민원은 현장에서 즉시 답변하고,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정식으로 접수하여 6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옴부즈만은 시민의 대리인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상득,신동택 시민옴부즈만은 "17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아직 생소한 옴부즈만 제도를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시민의 목소리에 한 발 다가가 귀 기울일 계획"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부담없이 상담장을 찾아주기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지난 2020년 5월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조례를 제정 후 공개모집과 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시민 옴부즈만 2명을 위촉하여 1월 1일자로 시민옴부즈만 사무실을 개소하였다.

사진설명

1-1. 이상득(좌측), 신동택(우측)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사 진
	감사위원회	김태연	540-2243	○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시민의 권익보호 위해 활발히 활동 중

아산시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 1월 1일부터 시민 옴부즈만으로 이상득(전 아산시청 공무원)·신동택(전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씨가 활동하고 있다.

옴부즈만은 시의 위법 및 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관해 아산시 및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를 비롯해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행정제도 및 제도의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는 권고 또는 의견표명,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및 상담 등 업무를 임기 2년 동안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고충민원 접수는 아산시청 본관 15층에 위치한 감사위원회 사무실에 방문하여 전반적인 시정 활동에 대한 고충을 접수할 수 있다.

아산시 시민옴부즈만은 한 달여간 6건의 고충민원을 접수 받아 조정 1건, 상담 완료 3건을 처리하였으며 2건은 현재 조사중에 있다.

고충민원 처리 사례로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고지와 관련하여 행정에 대한 불만으로 민원이 접수됐지만 옴부즈만이 민원인과 관련부서의 입장을 들어 본파 고지 과정에서의 오해가 생긴 결과였으며 민원인이 요구하는 시정기간 연장 내용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조정 처리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고충은 복합적이고 다양하며 활동중인 옴부즈만은 시민 권익 옹호 활동 경력과 행정경험 모두 풍부한 적임자”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민관 갈등의 조정·중재자로서 활발한 활동으로 시민의 권익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상득, 신동택 옴부즈만은 “시민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해결점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면서 “아직 옴부즈만 제도를 모르는 시민분들이 많아 홍보활동에도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한편, 옴부즈만은 비사법적 시민권익 보호제도의 일환으로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행정에 대한 고충을 접수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를 권고해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 발생하는 문제를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는 제도이다.

아산시, 시민옴부즈만 시민고충 해결 하러 읍면동 찾아간다

✎ 최진규 기자 | ⑤ 승인 2021.02.16 16:28



아산시청 전경

(아산=국제뉴스) 최진규 기자 =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시민의 권익 보호 구제를 위해 오는 3월 3일부터 '읍면동 대상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을 운영한다.

시는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을 통해 3월부터 12월까지 17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시민의 고충을 듣고 풀어나가는 민원상담실을 운영한다.

고충민원 현장 상담은 ▲3월 3일 온양4동 ▲3월 17일 영인면 ▲3월 31일 엄치읍 ▲4월 14일 온양1동 ▲4월 28일 배방읍에서 실시하며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라. 각종 매체 활용 홍보

□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지(아산뉴스), (SNS 인스타그램), 활용

아산시 시민옴부즈만
**찾아가는 읍·면·동
고충민원 상담의 날 운영**

일 정	온양4동(3.3.수), 영인면(3.17.수), 염치읍(3.31.수), 온양1동(4.14.수), 배방읍(4.28.수) 오후 2~5시(해당 행정복지센터 내)
대 상	아산시민(행정기관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권익을 침해받으신 분)
상 담	시민옴부즈만 2명
문 의	시민옴부즈만실 041-540-2243

아산시 시민옴부즈만,
**찾아가는 읍·면·동
고충민원 상담의 날 운영**

문의
시민옴부즈만실
540-2243

문포면(7.7.수), **인주면**(7.21.수), **도고면**(8.25.수)
오후2시 ~ 오후5시(해당 행정복지센터 내)

대상 아산시민
(행정기관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권익을 침해받으신 분)

상담 시민옴부즈만 2명

02 시정 소식

아산뉴스 제372호 · 2021년 3월 15일




아산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2월 26일, 아산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1차 우선 접종 대상자는 요양병원, 정신요양 시설, 노인 의료복지시설 등 고위험 시설에서 일하거나 입원·입소 해있는 65세 미만 성인 1,927명(종사자 1,188명, 입원·입소자 739명)입니다. 아산시는 2월 19일까지 관내 1차 우선 접종 대상자를 대상으로 접종 희망자 집수를 했는데요, 전체 대상자의 94.9%인 1,828명이 접종 희망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치 의료 인력이 있는 정신병원, 요양병원 등은 자체 의료 인력이 접종을 진행하고요, 의료 인력이 없는 요양 시설 등 28개소에는 방문 접종팀이 방문 접종을 진행합니다. 아산시 보건소는 의사·간호사·행정인력 등으로 꾸려진 방문 접종팀 10팀을 꾸렸는데요,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모의훈련 및 온라인 교육을 진행 하고,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발생 상황에 대비해 응급 후송병원 및 아산시 소방서와 협력을 구축했습니다. 곧 일반 시민 대상 접종도 시작됩니다. 일부에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불안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아산시 보건소 관계자는 "아스트라제네카는 세계보건기구와 식약처가 엄격한 기준으로 안정성을 확인한 백신"이라며 "아산시는 접종 직후 즉시 의료 이상 반응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접종에 임해달라" 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더라도 집단면역 이 형성될 때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항할 면역력이 생길 때까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 지침 꼭 지켜주세요 한다는 기 기억해 주세요.

충남 최초 도입된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시민 권익보호 활동 기대

아산시가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 충남 최초로 도입한 '시민 옴부즈만'이 1월 1일 첫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시민 옴부즈만은 시민이 시정으로 권리 침해 및 불만을 겪었다고 여길 때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조사하고 시정 권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2년 임기 동안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주요 업무는 고충민원 조사와 처리, 집단 민원 중재·조정 및 감사 청구, 시정에 대한 감사와 비위 시정 등에 대한 조치 강구 권고 등입니다. 아산시는 아직 옴부즈만 제도를 모르는 시민이 많은 만큼 옴부즈만 제도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요, 그중 하나가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입니다. 시민옴부즈만은 3월부터 12월까지 17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면서 현장에서 시민들의 고충을 들을 예정인데요, ▲3월 3일 문양 4동 ▲3월 17일 영인면 ▲3월 31일 영지읍 ▲4월 14일 온양 1동 ▲4월 28일 비봉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 된다고 합니다. 운영시간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아산 시청 본관 15층에 위치한 감사위원회 사무실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고충민원 접수 가능하합니다.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상담 받을 수 있으며, 단순 민원은 현장에서 즉시 답변하고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충민원으로 정식 접수해 6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다시 관여하는 '함으로 민관
갈등의 조정, 중재자로서
시민옴부즈만의 활발한
활동이 기대된다.
시민옴부즈만제도의
배를 정칙으로 시민
권익이 크게 향상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산시 콜센터 팩스번호 1422-42

아산뉴스는 무료입니다

asanstory

#알림톡톡 ⑥
7/8

아산시 시민옴부즈만, 찾아가는 읍·면·동 고충민원 상담의 날 운영

일정 : 온양2동(5.12.수), 온양3동(5.26.수), 음봉면(6.9.수), 선장면(6.23.수)
 오후2시~오후5시(해당 행정복지센터 내)

대상 : 아산시민(행정기관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권익을 침해받으신 분)

상담 : 시민옴부즈만 2명

문의 : 시민옴부즈만실
 041-540-2243

2_mine님 외 33명이 좋아합니다
 asanstory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어버이날, 어린이날 등 가족 행사가 많은데요... 더 보기

10 생활정보

아산뉴스 제370호 - 2021년 5월 15(월)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

시행기간 2020. 8. 5(수) ~ 2022. 8. 4(목)

적용지역 및 대상 읍·면지역 - 토지 및 건물 / 동지역 - 농지 및 임야

적용범위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문의사항 토지(토지관리과) 530-6470-1

건물(건축과) 540-2945

수소전기차 민간보급 사업

기간 2021. 2. 22(월) - 예산 소진 시

내용 출고·등록 등으로 수소전기차 30대 지원

금액 3,450만원 정액 지원

방법 수소차 판매 대리점 방문 접수

문의 기후변화대책과 530-6255

아산시 시민옴부즈만, 찾아가는 읍·면·동 고충민원 상담의 날 운영

일 정 온양4동(3.3.수), 양민면(3.17.수), 영지읍(3.31.수),

온양1동(4.14.수), 비양읍(4.28.수)

오후 2~5시(해당 행정복지센터 내)

대 상

아산시민 (행정기관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권익을 침해받으신 분)

상 담

시민옴부즈만 2명

문 의

시민옴부즈만실 540-2243

시민 옴부즈만 :

시민이 시정으로 권리 침해 및 불편을 겪었다고 이질과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조사하고 시정 권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산시청 로비 앞)



(온양1동 행정복지센터 정문)

마. 읍면동 고충민원 주민 상담



3. 3.(수) 온양4동 현장 주민 상담



3. 31.(수) 염치읍 현장 주민 상담



6. 9.(수) 음봉면 현장 주민 상담



6. 23.(수) 선장면 현장 주민 상담



7.7.(수) 둔포면 현장 주민 상담



7.21.(수) 인주면 현장 주민 상담



10.27.(수) 신창면 현장 주민 상담



11.10.(수) 송악면 현장 주민 상담

바. 2021년 읍면동 순회 고충민원 상담 일정표

※ (격주 수요일 오후 2시~)

월 별	일 정	읍·면·동	비 고
3월	3일(수)	온양 4동(회의실)	
	17일(수)	영인면(회의실)	
	31일(수)	염치읍(회의실)	
4월	14일(수)	온양 1동(회의실)	
	28일(수)	배방읍(회의실)	
5월	12일(수)	온양 2동(회의실)	
	26일(수)	온양 3동(회의실)	
6월	9일(수)	음봉면(회의실)	
	23일(수)	선장면(회의실)	
7월	7일(수)	둔포면(회의실)	
	21일(수)	인주면(회의실)	
8월	25일(수)	도고면(회의실)	
9월	8일(수)	온양 5동(회의실)	
	29일(수)	온양 6동(회의실)	
10월	13일(수)	탕정면(회의실)	
	27일(수)	신창면(회의실)	
11월	10일(수)	송악면(회의실)	

2

고충민원 현장 방문 활동

1 고충민원 조사 부서 간 의견청취 및 협력회의



(건축 허가 시 부서 간 협력방안 마련 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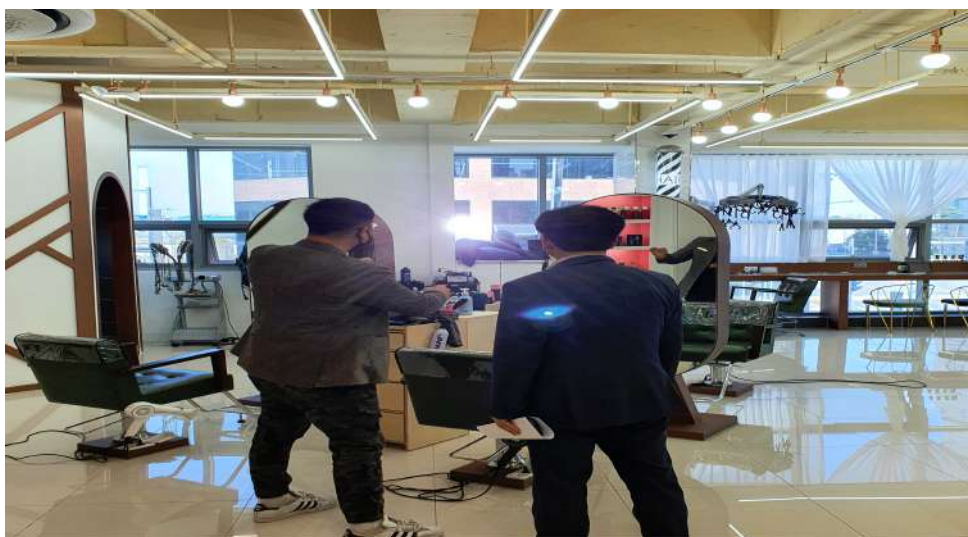


(무허가 축사 이행강제금 관련 부서 간 협력방안 마련 간담회)

2 민원 현장 조사 활동



(국유지 민원 관련 현장 조사)



(창문 빛 반사 민원 현장 조사)



(불법 가림막 철거 관련 민원 조사)



(배수관 관로 변경 요청 민원 현장 조사)



(○○면 민원 현장 조사)



(수도요금 부과 이의 민원 현장 조사)

□ 권익위-아산시 시민옴부즈만 협력 고충민원 조사 활동



□ 경기도 시흥시 벤치마킹

- 일 자 : 2021. 4. 1.(수)
- 목 적 : 지방옴부즈만 선진 운영 지자체 벤치마킹
- 참석자 : 아산시 시민옴부즈만 외 2명
- 내 용 : 옴부즈만 제도 선진 운영 지자체 벤치마킹
- 방문사진(시흥시)



□ 경기도 평택시 벤치마킹

- 일 자 : 2021. 4. 1.(수)
- 목 적 : 지방옴부즈만 선진 운영 지자체 벤치마킹
- 참석자 : 아산시 시민옴부즈만 외 2명
- 내 용 : 옴부즈만 제도 선진 운영 지자체 벤치마킹

○ 방문사진(평택시)



□ 충청남도 공주시 시민옴부즈만 방문

○ 일 자 : 2021. 12. 15.(수)

○ 목 적 : 지자체 간 옴부즈만 고충민원 처리 협력회의

○ 참석자 : 아산시 시민옴부즈만 2명 및 담당 공무원

○ 내 용 : 아산시-공주시 시민옴부즈만 고충민원 처리 사례 공유 및
협의회 논의

○ 방문사진(공주시)



4

지방옴부즈만 활성화 전략회의(국민권익위원회)

- 일시/장소 : ' 21. 8. 24(화) 14:00 / 세종청사 7동 상황실(516호)
- 참석자 : 약 15명
 - 조례 제정 및 설치를 준비 중인 지자체*의 업무담당 팀장(실무자)
 - * 인천광역시, 서울 성북구, 대전 서구, 포천시, 천안시, 공주시, 당진시, 대구 달서구
 - 국민권익위, 아산시 시민옴부즈만, 이천시 담당자(최근 설치운영) 등
- 내 용
 - 지자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지방옴부즈만) 확산 및 고충민원 처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회의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 사례 소개 등을 통해 효율적인 설치 확산을 도모

※사례발표 : 아산시 시민옴부즈만 활동 사례발표 (신동택 대표위원)

○ 회의사진



- 추진방향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 사례 발표 및 발전방안 토론을 통해 지자체 실정에 맞게 설치·운영되도록 지원
- 일시/장소 : ' 21. 9. 7.(목) 14:00~16:00 / 아산시청 상황실(본관 2층)
- 참석자 : 약 20명
 - 인구 50만 이상 기초 지자체 중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계획이 없거나 추진 중인 지자체* 업무담당 팀장
 - *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청주시, 보령시
 - 최근 설치 지자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업무담당 팀장
 - * 대전 대덕구, 공주시
 - 국민권익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업무담당)
 - * 충청남도, 제천시, 아산시, 영동군, 부여군

○ 진행흐름

시간계획		내용	진행
14:00~ 14:10	'10	• 소개 말씀	아산시 시민옴부즈만 이상득 위원
14:10~ 14:30	'20	• 제도·법령 설명 • 국민권익위 및 지자체 운영 방식 발표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10문 10답	국민권익위 민원조사기획과장
14:30~ 15:30	'60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 현황 발표 ※ 아산시 시민옴부즈만 사례 발표	시민고충처리위 위원(업무담당 팀장) ※ 아산시 → 제천시 → 영동군 → 부여군 → 충청남도
15:30~ 16:00	'30	• 질의·답변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발전방안 토론	참석자 전원

○ 충청권 옴부즈만 세미나 진행 사진





가. 국민권익위원회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 일 시 : ' 21. 11. 25.(목) 10:00 ~ 16:00
- 장 소 : 아산시민체육관
- 시행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아산시 운영)
- 내 용 : 전 행정분야의 개별 고충민원을 상담 조사관이 상담하고 처리

※ 아산시 시민옴부즈만(신동택 대표위원) 지방옴부즈만 전문 상담관으로 참여

- 운영사진





나. 권익위원회 제2차 전국협의회 참석

- 일 시 : ' 21. 12. 1.(수) 14:00 ~ 16:00
- 장 소 : 정부세종청사 13동 대회의실(555호)
- 참석자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등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대표 위원 62명

※아산시 시민옴부즈만 신동택 대표위원 참석

- 내 용 :
 -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선출직 의장 선출
 - ' 21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지방옴부즈만) 관련 정책 추진상황 설명
 - 옴부즈만 우수 운영 사례 발표, 의견 수렴 및 발전방안 토론
- 운영사진



Ⅲ. 고충민원 처리결과

1. 2021년 고충민원 현황
2. 시정권고 사례
3. 의견표명 사례
4. 합의조정 사례
5. 상담해결 사례
6. 심의(상담)안내 사례



III. 고충민원 처리결과

1 2021년 고충민원 현황

① 고충민원 처리현황

(단위: 건)

합계	시정권고	의견표명	합의·조정	상당해결	심의(상담) 안내	이송 / 기각·각하
68	1	8	4	8	39	8

- 아산시 시민옴부즈만은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총 68건의 고충민원 등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음.

②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에 대한 수용 현황

(단위: 건)

합계	시정권고			의견표명			합의·조정
	계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계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수용
13	1	1	-	8	8	-	4

- 아산시 시민옴부즈만이 집행부에 권고, 의견표명 한 것은 9건, 합의·조정 처리된 것은 4건
- 집행부가 시민옴부즈만의 의견을 전부 또는 일부 수용한 것은 13건
(수용률: 100%)

③ 고충민원 분야별 현황

(단위: 건)

합계	일반행정	복지노동	재정세무	주택건축	도로교통	산업농림	기타
68	9	4	3	22	17	10	3

④ 고충민원 접수 경로별 현황

(단위: 건)

합계	방문	읍·면·동 현장 상담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팩스
68	27	24	15	2

사실행위 관련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결정 이의 - 시정권고

□ 민원 요지

- ○○면 ○○리 △△△-△번지 외 *필지에 대한 건축 허가 시 납부된 비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건 (비공개 결정 이의 관련 사실행위에 대한 제한적 정보공개 요청)

□ 신청 취지

- ○○면 ○○리 △△△-△번지 외 *필지에 대한 건축 허가 시 납부된 비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결정은 비공개하는 법령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부당한 결정이라고 생각됨
비공개에 대하여 재검토하시고 건축 허가 비용 등과 허가 연장 및 반려 사유 기타 관련 참고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피신청인의 의견

- 신청인은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매매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등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면서 손실을 보전받기 위한 소송이라고 전제를 했고, 정보 공개의 직접 대상자 여부도 논쟁의 여지가 있고 본인이 재판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기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비공개하였음,

□ 사실관계

○ 아산시 ○○○○관에 정보공개 청구(2020. 1.)

신청인은 매매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등 관련(사건번호:대전고등법원 ○○○○나○○○○○)의 원고 ○○○○○○○(주)의 ****로서 토지매수 계약금 지급, 토지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비용 지급 등으로 **억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었음에도 피고인이 대상 토지를 임의경매로 매각하여, 신청인과 관련된 다수가 손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하며 ○○면 ○○리 △△△-△번지 외 *필지 건축 허가 시 납부된 비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

○ 정보공개에 대한 비공개(아산시 ○○○○관-****, 2021. 2.) → 아산시 ○○○○관에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는 비공개 사유라 판단하여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

○ 시민옴부즈만실로 고충민원 접수(2021. 2.)

아산시 ○○○○관에서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를 결정한 것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에 대해 시정을 요구함

○ 담당부서(○○○○관) 협의(2021. 2.)

시민옴부즈만은 아산시 ○○○○관을 방문하여 ○○○, ○○○○팀장과 민원인의 고충 및 고충 해소 방안을 협의함

○ 신청인은 □□□□□□(주)의 ****로서 아산시 ○○면 ○○리 △△△-△번지 외 *필지 등 토지매수계약금 지급, 토지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비용 지급 등으로 **억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며 건축허가 등에 관련된 비용과 허가 연장 및 반려에 관한 참고내용을 공개해 달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음

□ 판단

가. 관련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중 략...)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나. 판단내용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의 원칙과 국가기밀보호 원칙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나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가 원칙이고, 신청인은 본인과 관련된 회사에서 업무수행과 관련된 아산시의 행정행위에 관련된 사실행위만을 제한적으로 정보공개 해 달라는 것으로서,

○ 아산시에서 요청한 정보공개를 비공개한 근거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를 제시하였으나, 법원과 검찰, 경찰 등 사법 영역에서 **공개될 경우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판달될 때 비공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가능한 한 공개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취지인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됨

※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69892 판결(정보공개처분 취소)에 의하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4호에서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 요지를 밝히면서 관련 소송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여 재판의 공정성과 정확성에 기여 하였다고 보일 뿐이고,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을 훼손할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보여 공개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 판결도 있는바,

-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이 정보공개 건과 관련성이 있는 신청 당사자의 이해관계인이라 판단되고 이를 공개 할경우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보공개 된 문건이 법원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재판의 공정성과 정확성에 기여한다고 보이는바 정보공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결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법 제정 이유와 대법원 판례를 비추어 볼 때 정보공개 하는 것이 오히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재판의 공정성과 정확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으로 해당 정보를 공개하도록 “시정권고” 함

주택·도로점용 허가 시 일부 행정착오 개선 - 의견표명

□ 민원 요지

- 건축허가 및 도로점용 허가 과정에서 시의 행정착오 발생으로 인한 피해 보상 및 향후 대책 마련 요구

□ 신청 취지

- 신청인은 2017년 4월 단독주택 건축허가(○○동 ●●-●) 및 해당 진·출입로 도로점용(○○동 ■■-■) 허가를 받음. 그러나 2018년 7월 ○○○○○○으로부터 국유재산 무단변상금 부과 고지를 받고 해당 도로(○○동 ■■-■)가 국토교통부 소유의 국유지인 것을 인지하게 됨.

처음 아산시로부터 건축 허가 및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당시는 *만여 원의 도로점용료를 냈는데, ○○○○○○으로부터 국유지 무단 도로점용료 변상금 통지를 받은 후 매년 불법 도로점용료 변상금을 부과해와 피해 관련 고충을 호소.

□ 피신청인의 의견

- (○○○○○관) 건축허가신청 당시, ○○동 ■■-■번지는 시도*호선에 저촉된 토지이며, 국토교통부 소유 토지로 지목은 도로로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 협의가 신청됨.

「건축법」 제11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신청된 인·허가 및 관련법규 협의를 요청(○○○○○관-**(2017. 3.) 하여, ‘건축허가(건축)신청서(***)] 협의 완료 후 건축허가 처리함.

- (○○과) ○○○○○○에서 국유재산 무단변상금 부과 고지서를 신청인이 접수하여 2017. 4. 에 납부한 금 66,770원을 환급 조치함. 국유지인 ○○○○○○ 부지에 대해 도로점용 허가한 사항으로 이후 ○○○○○○ 부지를 제외한 면적에 대한 점용 변경 처리하였음.

- (○○과) 본 토지는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지 중 「국유재산법」 제28조제 4항,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41조2항 및 「충청남도 사무 위임 규칙」 제2조에 따라 아산시 ○○과에 위임된 재산이 아니므로 “의견없음” 회신된 사항이며 해당 국유지 관리기관(○○○○○○)과 ‘협의 의견’ 이 누락 된 사유는 ‘우리부서’ 해당 사항 없음.

□ 사실관계

- 2017년 단독주택 및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동○○-○(건축허가), ■■■-■(도로점용) 번지에 아산시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았으나, 신청인은 2018년 ○○○○○○에서 국유재산 무단변상금 부과 고지 확인 후 해당 점용도로(■■■-■번지)가 국유지임을 알게 되어 시 행정이 잘못된 것을 인지 고충민원을 제기함
- 시민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이 접수된(2021. 1. 14.) 후 당시 건축 허가를 승인해 준 ○○○○관을 방문하여 민원 신청인의 고충민원 발생 원인으로 행정착오 문제, 국유지 관리기관과 협의 미비점 등에 대하여 1차 확인 검토 이후 고충민원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부서(○○○○관, ○○과 등)에 각각 해당 민원 관련 자료 및 부서 검토의견을 요구(1차 ' 21. 1. 19. 2차 ' 21. 1. 28.)하여 관련 내용을 검토함.
- 그리고 신청인의 주택 및 도로점용 현장(○○동 ■■■-■)을 방문하여 현장 사실 확인, 신청인의 의견 청취 등을 진행함(2021. 2. 23.)
- 해당 고충민원 관련 부서(○○○○관, ○○과, ○○과 참석)와 향후 민원 개선대책 마련 협의 회의를 진행함(2021. 2. 26.)

□ 판단

가. 관련 법령

- 「국유재산법」 제28조
-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6항 등

나. 판단내용

- 본 민원은 아산시의 행정 부주의 등으로 국유지(○○동 ■■-■) 관리 기관(○○○○○○○○)과 협의가 누락된 상태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는 행정착오로 고충민원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건축 허가 시 의제처리 협의 과정에서 의견 개진 미비 등 관계 부서의 소극행정도 일부 행정착오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신청인의 행정착오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와 관련하여, 아산시의 행정착오가 국유지 이용에 따른 도로점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과는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으로 보아 신청인의 금전적인 피해보상 요구는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결론

- 피신청인은 향후 행정 착오(도로점용 허가 시 해당 국유지 관련 기관 - ○○○○○○○- 협의 누락 등)로 인한 고충민원 재발 방지를 위하여 담당자 부주의 등에 대하여 조치하고, 도로점용 허가 시 국유지 기관 협의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국유지 도로점용 허가 관련 의제 협의 시 적극 의견 개진 방안 마련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의견을 표명” 한다.



<시민옴부즈만 민원 현장 방문>

개인 사유지 불법 점용 및 훼손 이의 - 의견표명

□ 민원 요지

- ○○면 ○○리 개인 사유지에 대한 불법 점용 및 훼손으로 인한 피해 발생에 따른 조치 요구

□ 신청 취지

- ○○면 ○○리 ◇◇◇-◇◇번지 소유자인데 좌측 ●●●-●●번지를 개발하며 완만했던 경사지를 7m가량의 급경사지로 만들어 여름철에 토사가 흘러내려 인사사고 및 재산피해 발생이 우려됨으로 조치해 줄 것을 요망
- ○○면 ○○리 □□□-□□, □□□-□□번지의 도로 소유자인데 도로의 앞 ▲▲▲-▲▲번지 토지 소유자가 동의 없이 건축물을 짓고 있음. 시 담당자에게도 민원 제기를 하였지만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어 조치해 줄 것을 요청

□ 피신청인의 의견

- (○○○○과) ○○면 ○○리 ◇◇◇-◇◇번지를 개발함에 있어 절토 및 성토는 형질변경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받아야 하지만 해당 필지는 개발행위를 받지 않은 사항으로 확인됨.
- (○○○○관) ○○면 ○○리 ●●●-●●번지에 대해 2020. 4. 1. 건축신고서가 제출되어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신고처리 된 사항이며 상기 건축신고서 첨부문서 중 □□□-□□, □□□-□□번지 토지소유자인 신청인이 동의한 서류가 있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

□ 사실관계

〈절개지 붕괴위험 관련 민원〉

- ○○면 ○○리 □□□-□□번지를 개발하며 완만했던 경사지를 급경사로 만들어 여름철 장맛비에 토사가 흘러내려 인사사고 및 재산피해 우려된다는 내용의 고충민원을 인터넷(온라인)으로 신청(2021. 4. 22.)
- 해당 민원에 대해 관련 법규에 의해 허가 여부 및 앞으로의 조치계획을 송부하도 통보(시민옴부즈만 ⇒ ○○○○과) 2021. 4. 23.
- 관련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 결과, 해당 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관련 서류를 찾아본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에 따라 행위자의 인적사항 파악 후 원상회복 명령 예정이라고 통보받음 (○○○○과→시민옴부즈만) 2021. 4. 26.
- 옴부즈만이 조사한 결과 절토 및 성토 등 토지의 형질변경시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해당 필지 중 일부는 개발행위를 받지 않은 사항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하고 피해방지대책을 강구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건축착공계 시 미동의 건축 진행 민원〉

- ○○○○관 행정조치 내역
 - 2020. 8. :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처리
 - 2020. 9. : 착공신고 처리
 - 2020. 11. : 신고사항 변경(1차처리)
 - 2020. 12. : 건축관계자 변경 처리
 - 2021. 1. : 건축관계자 변경 처리

- 2021. 4. 시민옴부즈만에게 건축착공시 미동의 건축진행으로 고충민원 제기
- 2021. 4. 고충민원 관련 자료 요구(허가담당관)
- 2021. 4. 고충민원 관련 1차 자료 제출(○○○○관 → 시민옴부즈만)
- 2021. 5. 고충민원 관련 2차 자료 제출(○○○○관 → 시민옴부즈만)

□ 판단

가. 관련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0조 제3항
- 「건축법」 제14조 등

나. 판단내용

- 2020. 4. 1. 아산시 ○○면 ○○리 ●●●-●●●번지에 대해 건축신고서 제출시에 신청인의 동의서(인감증명서 포함)를 첨부하여 제출되었으며, 관련 규정 검토 후 2020. 8. 5. 건축신고 처리된 사항으로 신청인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건축착공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임
- 첨부된 도로 및 배수(우 오수, 상 하수)로 연결 사용 동의서에 *인의 토지 소유주 동의를 받으면서 ○○면 ○○리 ○○○-○○번지는 신청인의 소유토지인데 △△가 동의를 해준 것으로 되어 있다고 신청인은 잘못된 서류라고 주장을 하나,
신청인은 2018년 4월에 △△에게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및 도로부지 조성목적으로 신청인이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토지사용 승낙을 한 바 있으며,

2020년에 제출한 사용승낙서 표기란에도 ○○○-○○번지가 명시되어 있고, 표시된 지번이 한 페이지에 있으며 신청인(소유권자)이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으므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 다만, 건축으로 인하여 소음, 먼지, 자재적치 등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가 요망됨

□ 결론

- 피신청인은 절토 및 성토 등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아산시 ○○면 ○○리 ◇◇◇-◇◇번지 행위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하여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리 □□□-□□번지 건축 진행 시 신청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의견표명” 함

진·출입로 개설 및 배수로 설치 요청 - 의견표명

□ 민원 요지

- ○○○면 ○○리 ■■■-■번지 토지에 대해 진·출입로 개설 및 배수로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

□ 신청 취지

- 국지도에 바로 인접한 ○○○면 ○○리 ■■■-■번지에 조그만 농지(밭)만 남아 있는데 도로공사 시 진·출입로를 포장해 준다고 공무원 및 공사업자가 약속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포장을 해주지 않고 있어 비만 오면 질퍽거리고 잡초가 많이 자라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또한, 미포장된 진·출입로 바로 옆에 아산시에서 버스 승강장을 만들어 놔는데 인접한 농지보다 높이 설치를 하고, 밭쪽으로 배수로를 만들지 않아 비만 오면 농지(밭)로 빗물이 흘러서 농사를 짓는데 많은 애로 사항이 발생함

□ 피신청인의 의견

- (○○○○과) 현장을 확인해 보니 민원인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국지도□□호선은 (주)○○○○○○○ 등 산단 진·출입 및 시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공사로서 2020. 1. 20. 충청남도 ○○○○사업소에서 준공검사를 완료한 노선임.
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행정절차(충청남도 ○○○○사업소 협의 및 예산편성) 기간이 있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사실관계

- 2021. 5. 13. 신청인은 시민옴부즈만을 찾아 그동안의 국지도 □□호선 공사와 (주)○○○○○○과 관련된 고충민원을 호소함. 시민옴부즈만은 해당 민원 현장을 방문하여 신청인으로부터 현장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함
- 2021. 5. 7. 시민옴부즈만은 ○○○○과(○○○○팀)와 민원 해소방안 협의
△△△△과 △△△팀 팀장으로부터 주민숙원 사업비로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협의함

□ 판단

가. 관련 법령

- 「행정기본법」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

나. 판단내용

- 신청인은 산단 진입을 위한 국지도 □□호선 공사를 진행하면서 주택과 농지 사이로 도로가 확·포장 되면서 많은 사유지가 도로로 편입되었고 도로와 접한 일부 농경지(밭)만 남아 있는 상태임
- 국지도 □□호선 도로와 인접한 농지(주로 논)로 들어가는 대부분의 진·출입로가 거의 다 시멘트 포장이 완료되어 있었으나, 신청인의 농지(밭)로 들어가는 진·출입로는 흙관을 묻고 도로경계석을 낮추어 진·출입은 할 수 있으나 진·출입로 포장이 되지 않고, 승강장 보다 지대가 낮아 우기에 물빠짐이 안되고 빗물이 밭으로 흘러들어 질퍽거리고 잡초가 쉽게 자라서 신청인의 고충이 클 것으로 보임

- 공공의 이익을 위한 국지도 □□호선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자신의 주택과 농지사이의 많은 사유지가 편입되어 할 수 없이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이사까지 한 상태에서, 일부 남은 농지(밭)로 들어가는 진출입로를 포장해 주겠다고 공무원(공사관계자)으로부터 확답을 들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진·출입로 포장을 해주지 않았다면 행정기관의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 된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국지도 □□호선 공사가 2020. 1. 20. 완공되어 준공검사까지 난 상태에서 충청남도 ○○○○사업소와 협의 과정을 거쳐 예산을 편성하여 고충민원 해결을 한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예상되기에 민원인의 고충과 불만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판단됨.
- 신청인은 사업 주체가 어디냐에 관계없이 아산시에 불만을 갖고 있으며 아산시에서 민원을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아산시에서는 탄력적으로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과 △△△팀에서 소규모 숙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과에서 관련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 결론

- 공공사업에 적극 협조 해온 신청인과 기 약속[「행정기본법」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된 진·출입로 포장 및 배수로 설치가 시행되지 않아 제기한 고충민원은 시 행정에 대한 신뢰 향상을 위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련 예산 투입 등 고충민원을 적극 해결토록 “의견표명” 함.

도시계획도로 해지 건축물 진출입로 확보 요청 - 의견표명

□ 민원 요지

- 도시계획도로로 계획 해제로 인해 건축물이 맹지가 되어 억울하오니 건축물의 진출입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 요청

□ 신청 취지

- △ △ 년경 ○○면 ○○리 □□□~● 대지에 문제의 □□□~㉠㉡번지가 도시계획도로로 계획되어 있어 진입로로 인정되어 건축허가를 취득하여 건물이 준공되었고, 신청인이 2003년 4월 위 건물을 매입하였으며 읍내리 □□□-㉠㉡번지가 도시계획 입안지구에서 도시계획도로로 확정고시 되었음.
- 그 뒤에 문제의 □□□-㉠㉡번지의 도로개설이 늦어지면서 문제의 땅 주인이 2006년경 “도로 개설시 언제든지 보상없이 철거하겠다.”는 조건부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고 건축행위를 함으로써, 진입로가 막히고 건물 뒤에 있는 주차장까지 사용할 수 없는 맹지가 되어 한동안 가게 문을 닫기도 하였으며, 지금까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기만을 기다려 왔는데, 도시계획도로 계획(안)이 해제 되었다는 것이 너무 억울함.
- 더구나 도시계획도로였던 □□□-㉠㉡번지 소유주가 이제 정식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짓는다고 하니 도시계획선을 근거로 건축허가 되고 준공된 건축물이 맹지가 되어 건축물에 대한 진·출입까지 어렵게 되었음.
도시계획선을 근거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도시계획도로가 해제되고 맹지가 된 건축물의 진출입로를 확보해 주시기를 요청.

□ 피신청인의 의견

○ (○○○○과)

▶ 추진 경위

- 1997년 ○○면 ○○리 □□□-●번지 상가건물 신축(당초 국토이용 관리법에 따른 준도시지역(취락지구) - 비도시지역
- 2003. 2. 도시지역 편입 및 도시계획시설(대로*~**, 소로 *~**)결정
- 2018. 3. 소로*~** 폐지(아산시 고시 제**~**호)
- 2018. 5. 대로*~**변경(충청남도 고시 제**~**호)

▶ 검토의견

- 당초 도시계획시설 도로(대로*~**, 소로*~**)가 2023년까지 집행계획이 없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대비하기 위해 폐지·변경되어 신청인 필지(□□□-●번지)가 맹지가 됨
- 앞으로 도로개설계획이 있는 경우(도로과)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예정

○ (○○과)

- ○○면 ○○리 □□□-㉠㉠번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결과에 따라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사업추진 검토 계획임

○ (○○○○관)

▶ 추진경위

- 1997년경 도시계획도로 계획선(○○면 ○○리 □□□-㉠㉠)을 통해 건축허가
- 2018. 3월경 도시계획도로 계획선 해제되어 ○○면 ○○리 □□□-●번지가 맹지가 됨
- ○○면 ○○리 □□□-㉠㉠번지의 토지가 도시계획도로 계획선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허가를 득한 후 근린생활시설을 축조하였으며 도시계획선이 해지된 이후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추가연장이 불가하여 2021. 3. 1.까지 철거하는 조건으로 6차까지 연장되었으나 현재 해당 가설건축물 건축주가 자금 사정으로 현재까지 철거되지 않고 있는 상태임

▶ 검토의견

- 현행법상 토지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여야 하며 건축법 및 기타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면 건축허가를 득할 수 있음
-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당사자들 간 해결해야 할 사항이나 ○○면 ○○리□□□-●번지와 □□□-㉠㉠번지 사이 도로는 오랜기간 동안 건축물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해당 현행도로 부분에 지장물이나 건축물을 건축할 시 통행에 상당한 방해가 되므로 개인소유의 땅이라 할지라도 건물 진출입을 위한 범위 내에서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축조를 지양하도록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유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사실관계

- 1997년 ○○면 ○○리 □□□-㉠㉠번지의 도로계획선을 통해 ○○면 ○○리 □□□-●번지 건축허가를 받아 상가신축(당초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준도시지역(취락지구) 하였고,
- 2003년 2월 : 도시지역 편입, 당초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 중 취락지구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도로계획선은 도시계획법(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대로 *-**, 소로*-**)된 이후,
- 2003년 4월경 신청인 ○○○은 □□□-●번지 상가건물을 매입하여 1층 160명 정도의 호프, 레스토랑을 2층 건물에도 약 160여 평의 당구장을 운영하였음.
- 도로개설 계획이 늦어지자 2005. 7. 12. 도시계획시설(도로)에 포함되었던 □□□-㉠㉠번지에 가설건축물 설치허가(「건축법」제2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제2항)를 받아 건축행위를 함으로써 신청인의 진입로가 막히는 맹지가 되어 뒤편 주차장까지 사용할 수 없게 되자,
- 신청인은 아산시청에 빠른 도로개설을 위해 여러번 호소도 하고 사정도 했으나 예산사정으로 인해 도로개설이 되지 못함.
- 그 후에 2018. 3. 15. 소로*-** 폐지(아산시 고시 제**-**호에 의거 설치계획이 없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폐지)되었고,
- 2018. 5. 21. 대로*-** 충청남도고시 제**-**호 변경 [*-**번지 앞 대로

*-** 저촉부지(*번지) 부분해제〕되어 신청인의 필지(○○리 □□□-●번지)가 맹지가 됨.

□ 판단

가. 관련법령

-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나. 판단내용

- 살피건대 1997년도 도로계획선을 통해 건축허가를 득하여 상가를 건축하였고 2003년 2월에 도시지역에 편입되어 도시계획법에 의거 도로계획선은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어 20여 년 동안 도로가 개설되기만을 기다렸던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막막해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행정 신뢰 보호의 원칙에 입각해서도 문제가 없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신청인은 도로계획선(○○면 ○○리 □□□-㉠㉠)을 통해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면 ○○리 □□□-●)을 2003년에 매입하였고, 비도시지역에서 2003년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서 도로계획선은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어 빠른 시일안에 도로가 개설되기만을 소망하여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것으로 추정된다.
- 2023년까지 장기간 집행계획이 없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하여 2018년 도시계획시설(도로) 폐지 및 변경됨에 따라 신청인의 상가건물은 맹지가 되었다.
- 하물며 2021. 3. 21.까지 철거조건으로 연장되어 오던 가설건축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정식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보다 더한 맹지가 될까 봐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 아산시(○○○○관)에서는 현행법상 도시계획시설(도로)이 폐지된 토지에

건축신청이 들어온다면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고 기타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면 건축허가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나,

-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고 되어 있고,
-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되어 있다.
-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또는 변경)에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 11호 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자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 되어 있으며,
 - 특히,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신청자로부터 건축허가가 접수되면, 통로(진입로)에 해당하는 부분을 도로로 지정할 권리 및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앞으로 도로계획시설(도로)이 폐지 및 변경된 ○○면 ○○리 □□□-①①번지에 건축허가가 들어 온다면 이 도로와 □□□-●번지 건물의 통행로 확보 차원에서 건축법상 도로 지정을 할 필요가 있음이 상당하다.

□ 결론

- ○○면 ○○리 □□□-①①번지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건축법상 도로 지정 등을 통하여 기존 건물의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행정조치 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환경관리 시정 및 점자블록 개선 요청 - 의견표명

□ 민원 요지

- ○○읍 □□리 △△△△번지 인근에 무단투기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환경관리 시정이 요구되며, 또한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돕기 위한 점자블록이 잘못 설치되어 있는 것 같아 개선 요청

□ 신청 취지

- 아산시 ○○읍 ○○○길 △△-△△번지와 상가와 학교 등하굣길 사이 공터에 잡풀이 무성하고, 쓰레기가 나뒹굴고 무단투기 쓰레기가 산더미가 되었으며, 폐형광등은 쌓인 채 수거되지 않고, 누군가 동의도 없이 가져다 놓은 헌옷수거함은 쓰레기더미가 되어 있음.
또한,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게 설치한 말뚝이 쓰레기와 제법 어울려 커버는 뜯겨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음.
그리고 시각장애인 보행을 돕기 위한 “노란색 점자블록”은 그곳만 바라 보며 가다 보면 전봇대에 부딪치게 됩니다. 빠른 시정을 요구함.

□ 피신청인의 의견

<○○읍>

- ○○초등학교 어린이들 통행로에 폐형광등·폐건전지함이 있는데 수거되지 않고 있어 지저분하였으며, 민간에서 설치한 헌옷 수거함에서 헌옷도 수거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일반쓰레기도 투기하므로 매우 지저분하였음
- *.* (금) ○○읍사무소 환경관리반에서 일반쓰레기를 치우고, 폐형광등·폐건전지 등을 정리 완료하였음. 앞으로도 순찰을 강화하고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지 않도록 계도를 하도록 하겠으며 ○○○○과와 협의하여 쓰레기 배출금지 안내판도 세우도록 하겠음.

<○○○○과>

- ○○읍과 협의하여 ○○초등학교 학생들이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는 곳에 쓰레기투기를 하지 않도록 쓰레기 배출 금지 안내판을 설치하고 폐형광등·폐건전지함도 치우도록 하겠음.

<○○과>

- 2008년 아산신도시 △△지구 1단계 준공 시 □□(▷▷▷▷▷▷)에서 설치된 지역으로서, 해당 도로에 ○○초등학교의 진입로를 배치하면서, 인접대로와 연결도로 구간의 차량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당초 총 2차로 도로 폭 15m의 도로를 좌회전, 우회전차로를 각각 반영하기 위하여 총 3차로로 변경하면서 불가피하게 양쪽 보도를 당초 2m에서 1m로 축소하게 된 사항으로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들어가야할 교통표지판, 가로등, 신호등을 설치하면서 점자블럭(선형블럭)에 저촉하게 되었음.
- 보도가 축소되어 점자블럭(선형블럭)을 옮겨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각각의 장애물 위치 30cm 전방지점에 경고를 뜻하는 점형블럭으로 교체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의 보행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음.

□ 사실관계

- 2021. 7. 6. (화) 아산시 홈페이지로 “쓰레기 문제 유발하는 환경관리요망” 한다는 민원을 접수 받음.
- 2021. 7. 7.(수) ○○읍사무소에 우선 유선으로 연락하여 ○○○○팀에서 쓰레기 처리 등 즉시 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청소토록 통보
- 2021. 7. 9.(금) ○○읍사무소 ○○○○팀에서 현장에 출장하여 현웃 수거함 옆에 널려있는 쓰레기와 폐형광등·폐건전지함에 최근까지 수거되지 않은 폐형광등과 폐건전지를 치우고 정리를 완료하였으며 우선 문자로 신청인에게 쓰레기 청소를 완료하였음을 알림
- 2021. 7. 18.(일) 14:00 신청인이 평일에는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일요일

오후에 ○○읍 □□리 △△△△번지에 출장나가 신청인과 함께 현장을 확인한바 현장의 지저분한 쓰레기 청소는 완료된 상태에 폐형광등·폐건전지 함은 치워져 있었고 ○○○○과 명의의 “쓰레기 투기 방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었음, 다만, 현장에는 민간인이 가져다 놓은 헌옷수거함만 놓여져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 신청인으로부터 앞으로도 도로변 쓰레기 무단투기를 금지해주고, 점자블록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신호등이나 교통안내표지판에 부딪치게 되니 장애인이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의견을 수렴함
- 2021. 7. 20.(화) ○○○○팀 △△△ 주무관과 감사위원회 사무실에서 만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장애인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함

□ 판단

가. 관련 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와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 관련)

3. 도로

7) 점자블록

- 가) 횡단보도의 진입부분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이를 유도하는 부분에는 횡단보도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보도 등과 차도의 경계 구간으로부터 보도 등의 폭의 5분의 4가 되는 지점까지 선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나) 횡단 도중의 일시대기용 안전지대와 횡단보도의 경계부분 중 안전지대 쪽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이를 유도하는 부분에는 횡단보도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선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의 전면(前面)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판단내용

- 본 지역은 2008년 당시 아산신도시 △△지구 1단계 준공 시 완료되었고 쓰레기 민원이 제기된 ○○읍 □□리 △△△△번지는 인근 단독 주택 및 상가의 주민들이 휴식하는 쉼터이자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다.
- 신청인은 이 쉼터를 겸한 통학로에 아산시에서 설치한 주민 편의를 위한 폐형광등·폐건전지 수거함과 민간에서 설치한 “헌옷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처음에는 청소도 잘 되고 있었는데, 아산시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어 너도 나도 버린 쓰레기봉지 등이 계속 쌓이고 있으며, 폐형광등과 폐건전지도 수거되지 않고 있어 주민 불만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 또한, ○○초등학교 건너편 도로에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한 점자(선형)블럭보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점자블럭 보도를 따라 가다 보면 가로등과 교통표지판에 부딪치게 되는 어이없는 행정을 펼치고 있어 시정을 요청하였다.
- 고충민원 접수 후에 7. 7(수) ○○읍에 유선으로 연락을 하였고, 7. 9. (금) ○○읍사무소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 쌓여 있던 쓰레기를 치우고 폐건전지와 폐형광등의 정리를 완료하였다.
- ○○○○과와 ○○읍에서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휴식공간이자 ○○초 어린이들의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는 건물사이 쉼터를 깨끗하게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또한, 2008년 당시 아산신도시 △△지구 1단계 준공 시 완료된 지역으로써, 해당도로에 ○○초등학교의 진입로를 배치하면서, 인접 대로와 연결도로 구간의 차량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당초 총2차로 도로폭 15m의

도로를 좌회전, 우회전차로를 각각 반영하기 위하여 총3차로로 변경하면서 불가피하게 양쪽보도를 당초 2m에서 1m로 축소하게 되어 이로 인해 부득이하게 도로표지판, 가로등, 신호등이 점자블록을 저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 허나,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위배된 것으로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점자블록(선형) 보도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 결론

- 앞으로 주민들의 휴식공간 및 ○○초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하고 ○○읍 ○○○길 △△-△△와 상가 사이에 있는 쉼터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과, △△읍)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법령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점자블록(선형) 보도를 이전하여 적법하게 재설치 하거나, 장애물 위치의 전방 30cm 지점에 경고를 뜻하는 점형블록을 부분 교체 설치하여 사고를 예방하도록 의견표명을 한다. (△△과)

농지전용 시 원상복구 없이 인허가 요청 - 의견표명

□ 민원 요지

- ○○면 △△△번지 일원 원상복구 없이 농지전용 등 개발행위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

□ 신청 취지

- 농업인의 경제적·문화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에서 토지를 1992. 8. 5. 구입하였고
- 이후 1993. 8. 19. ○○면 ○○리 △△△번지 일원을 잡종지로 지목변경 하였으나 1973년부터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되어 있던 토지(○○리 △△△-△, △△△-△△, △△△-△△)는 ○○ 소재지가 급속도로 도시화되는 추세에 맞춰 도로가 빨리 개설될 것이 예상되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지목변경 등을 할 필요가 없었음.
- 상기 토지 △필지는 1973 ~ 2003년까지 30년 동안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되어 있던 상태에서 그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을 받아 적법하게 신축된 농기계 수리시설, 면세유 구입을 위한 주유소, 농업용 자재 보관창고 등을 94년 적법하게 신축하고 현재까지 28년동안 농업인들이 평온한 상태로 진출입도로로 이용하고 있음.
- 농지전용 등 개발행위시에 농지법에 의해 원상복구 명령을 한다면 콘크리트포장 제거 및 폐기물 처리 등 철거비, 신설비용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이 되고, 그 기간동안 농업관련 시설(농기계수리센터, 주유소, 농업용 자재구입)을 이용할 수 없는 농업인들의 불편 및 경제적 손실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게 됨.

- 위와 같은 불가피성을 살펴주시어 원상복구 없이 농지전용 등 개발행위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요청

□ 피신청인의 의견

-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34조에 의한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득하거나 제35조에 의한 농지전용신고 등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그 행위자는 불법 농지전용에 해당되어 「농지법」 제42조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 농지전용협의 이후 목적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협의대상 부지는 지목이 전(전)으로 되어 있어 해당 부지에서의 개발행위가 중단(변경)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고충민원의 경우 1973년부터 30년간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당시에는 개발행위 등 인허가를 받지 않았고, 이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받아 농업인들의 경제적 삶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법하게 신·증축된 농업용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농지전용 시 원상복구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로 사료됨.

□ 사실관계

○ ○○면 ○○리 △△△번지의 변동사항

- 전(1740㎡) : 1987년 6월 분할되어 △△△번지에 부함(△△△-△, △△△-▶)
- 1992. 8. 5. ○○리 △△△ □□□으로부터 ▶▶▶으로 소유권 이전
- 전(1203㎡) : 1993년 3월 30일 분할되어 △△△번지에 부함(△△△-▽)
- 잡종지(1203㎡) : 1993년 8월 잡종지로 지목변경
- 1994. 7. 4. 건축물(농기계 수리시설, 주유소, 농자재 보관창고 등) 신축
- 잡종지(8875㎡) : 2000년 10월 23일 합병(△△△-△, △△△-▶, △△△-▽, △△△-◁, △△△-▶, △△△-◁, △△△-▽)

- ○○면 ○○리 ▲▲▲-△△, ▲▲▲-▷▷, ▲▲▲-◁ 변지의 변동사항
 - 1973. 12. 30.(건설부 고시 제****-***호) ○○ 도시지역 신설에 따른 도로 결정을 이유로 ○○○로 *-*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1992. 8. 5. ○○리 ▷▷▷ □□□으로부터 △△△△△△으로 소유권 이전
 - 199. 8. 19.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인접한 △△△번지를 농지전용 등을 통하여 잡종지로 지목변경 하면서도 위 번지는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 보상 후 도로로 만들 예정이었기 때문에 농지전용을 통한 지목변경을 할 필요성이 없었음
 - 1994. 7. 4. : 잡종지로 지목변경한 ○○면 ○○리 △△△번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를 건축법상의 도로로 인정받아 건물 A동(창고), B동(농기계센터, 위험물취급소), C동(주유소), D동(창고시설) 등을 신축
 - ○○면 ○○리 △△△번지에 건축물 신축과 함께 도시계획시설(도로)로 포함된 모든 토지를 건축물 진입도로로 포장을 완료함
 - 2003. 2. 27. 국도**호선(대로*-*)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기능 약화에 따라 「충청남도 고시 제****-**」에 의거 대로 1류(폭35m)에서 중로1류(폭20m)로 폭원 축소 변경

□ 판단

가. 관련법령

- 「농지법」 제2조, 제34조, 35조, 42조
- 「건축법」 제2조, 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

나. 판단내용

- 신청인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격이 부여된 **이다.
-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목적)에서 규정한 조합원의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목적을 이행하기 위하여
- 규정에 따라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 ***, ****」을 신축하기 위해 1992. 8. 5. □□리 *** ○○○○으로부터 ○○ 중심지로서 이미 도시화 되어가고 있던 ○○면 ○○리 ***번지 일원의 토지를 구입하였다.
- 1973. 12. 30.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되어 차후에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도로로 개설할 것이 예상되는 토지(○○리 ***-**, ***-**, ***-*)를 제외한 나머지 ***번지를 1993. 8. 19. 잡종지로 지목변경하였고,
- 20m 도로와 인접해 있는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받아 A동(창고) 547.25㎡, B동(농기계센터, 위험물취급소) 165.12㎡, C동(주유소) 84㎡, D동(창고시설) 498㎡, F동 135.21㎡, G동(주유소 화장실)을 1994. 7. 4. 사용승인 신축 및 증축하였고 이때 신청인은 농업관련 건축물의 진출입 도로로 도시계획시설(도로)을 포장한 것으로 보이며
- 그 후 2003. 3. 27. 국토**호선(대로 *-*)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기능 약화에 따라 「충청남도 고시 제**-**」에 의거 대로 1류(폭35m)에서 중로 1류(폭20m)로 폭원 축소 변경 되었으나 위 토지는 이미 농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에서 농업인들의 경제향상을 위한 건물의 진출입도로로 ○○면의 농민들이 지금까지 이용하고 있다.

(보존가치가 있는 농지인가의 여부)

- 구 농지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는 ‘농지라 함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 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제1호 (가)목〕로, ‘농지의 전용’이라 함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 등 농업 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라고(제9호)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도 불문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전이라 하여도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그 토지는 더 이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되고 그 결과 구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6.14. 선고 95 누18901 판결, 대법원 1996.9.24. 선고 96도1536 판결 등 참조) 라고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환경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기반으로서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하고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용되어야 하고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바

위 토지는 지목만 전으로 되어 있을 뿐이지 1993년부터 이미 포장되어 위 토지와 접한 농업인을 위한 건물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어 농지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하고 있고 상실한 상태가 오래되었을 뿐 아니라 발전하는 ○○면의 중심지로 인근 토지가 잡종지나 대지로 건물이 들어선 상태로 농지로서 보존할 가치가 전혀 없고 사실상 원상복구의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토지라 판단된다.

(농지 전용을 못했던 이유)

- 신청인이 농업인의 경제를 돕기 위해 시설을 건축하기 위해 지목이 전인 위 토지를 1992. 8. 5. 구입할 때에도 이미 도시화 되어 농지로서의 기능이 거의 상실 되어 가고 있었고 1993. 8. 19. **면 **리 ***번지를 농지전용을 받아 지목을 전에서 잡종지로 지목변경 하면서도 도시계획시설(도로)용지를 농지전용 하지 않은 것은
- 1973. 12. 30. 도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어 있어 빠른 시일 안에 도로로 개설

될 것으로 예상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농지전용 등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고, 만약에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당연히 이 토지와 접한 ***번지를 농지전용 등 개발행위를 할 때 함께 농지전용을 하고 건축물을 신축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

- 또한, 위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하여 아산시 **과에서는 1994. 7. 4. 농업활동 지원을 위한 건물을 사용승인 허가하였으며 현재 까지 수 많은 농민들이 이 도로를 이용하여 농업인 경제활동을 위하여 현재까지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

(농지 전용과 원상복구의 문제)

- 현재의 농지의 현상을 볼 때 비록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농지법」제1조에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 목적과 실제 농지로서의 현상이 상실되어 있고 상실된 상태가 일시적이지 않아 농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보아지며
- 1993. 8. 19. 신청인 토지 ○○리 ***번지 일대를 지목 전에서 잡종지로 농지 전용 등 개발행위를 하면서 입구인 도로 예정 부지를 농지전용하지 않은 것은 1973년부터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되었기 때문이고
 - 이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을 받아 농업인들을 위한 건축물(*, **, *** 등)의 진·출입을 위한 도로로 현재까지 농민들이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현 상태에서
 - 원상복구를 하고 다시 농지전용 신청을 하여 농지전용이 완료되고 난 뒤에 다시 도로로 포장해야 한다는 것은 농지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서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며
- 원상복구 시 콘크리트 폐기물 처리 후 바로 재포장하여 도로로 사용하는 만큼 경제적 손실과 더불어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농업 관련 시설을 이용하는 수많은 농업인들의 불편 또한 심각할 것이 예상된다.

- 어떠한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문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전이라 할지라도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그 토지는 더 이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보듯이
- 위 토지는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지만 1993년부터 이미 포장되어 농업인을 위한 건물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어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가 오래되었을 뿐 아니라 인근 주위에 토지가 잡종지나 대지로 건물이 들어선 상태로 농지로서 보존할 가치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고
- ○○면 ***-*, ***-**, ***-***번지는 △△~△△△년까지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시설에 인접해 있는 ○○면 ○○리 ***일대를 잡종지로 지목변경하면서도 위 토지는 지목변경할 필요가 없었고
- 아산시장(○○과)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받아 농업인을 위한 건축물을 적법하게 인·허가를 받아 신·증축하여 현재까지 농민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인바
- 농지전용 시 원상복구를 하게 된다면 아산시로부터 적법하게 신·증축 허가를 받은 농업 관련 시설을 농민이 이용할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 농업인들의 농기계수리, 면세유 구입을 위한 주유소 이용, 농업자재 구입을 할 수 없어 농업인들의 큰 불편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폐기물 처리 후 바로 재포장하는 만큼 신청인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더불어 환경오염도 예상된다.

□ 결론

- 도로계획시설(도로)의 폐지 및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농지전용과 관련된 농지전용 부담금 납부 등 일련의 법 절차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는 별문제로 하더라도 원상복구에 따른 철거비 및 신설 비용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방지하며 농업인들의 농기계 수리, 면세유 이용, 농업 자재 유통에 지장이 없도록 원상복구 없이 농지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견표명**한다.

상수도 요금 과다 부과 이의 - 의견표명

□ 민원 요지

- 다세대 주택 수도 요금이 한 달 사용량이 1년 사용량의 2배가 넘는 수준으로 과다 부과되었음에도 정상적으로 부과되었다는 소극적인 답변을 하여 이의 제기

□ 신청 취지

- 다세대 상가주택(아산시 ○○읍 ●●로 ***-**)에 한 달 수도 사용량이 △△톤 넘게 검침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확인해 보니 △▲톤으로 2020년 연간 사용량이 ▲▲톤이었는데 한달 사용량이 1년 사용량의 2배가 넘는 충격적이고 비상식적인 수준으로 검침되었음.
- 다행히 신청인의 건물에는 사용량 측정을 위한 개별적인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1~2인 가정이 9세대가 살고 있고, 2개의 가게가 1층에서 영업을 하고 있음.
- 개별적인 20개월의 누적 사용량이 △△여 톤으로 당월 부과된 한달 사용량보다 적은 수준. 개별적인 계량기의 합계에서 표시된 해당 숫자는 당연히 *월 한 달 간 물 사용량이 정상적으로 나왔다는 말을 반증. 더군다나 ○○○○소에 직접 찾아가 담당 공무원에게 관련 사항을 문의하였는데 해당 공무원은 “수도요금이 정상적으로 집계 되었으며, ◆◆만원의 요금이 부과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 ○○○○소에서 설치한 계량기 오류가 확실한 것 같은데 개인 계량기는 인정해 주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듣고 황당할 뿐입니다. 관련 사항에 대해 수도요금 폭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 피신청인의 의견

- 법령 및 관련 지침에 의거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으로 “계량기 오작동은 공신력 있는 기관(****연구소)에 의뢰하여 결과에 따라 처리를 한다.” 고 안내를 했는데 신청인의 입장에서 무성의하게 응대를 하였다고 느끼신 거 같으며, 시민의 입장에서 더욱 친절하게 응대하여 민원 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사실관계

- 2021. 8. 1. 비상식적인 수도요금 부과에 관한 민원 사항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
- 2021. 8. 5. 신청인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사정을 듣고 속상했던 상황에 대해 하소연을 듣고 현지 확인을 하기 위해 약속을 함
- 2021. 8. 5. 아산시 ○○읍 ●●로 ***-**에 출장하여 **집 사장님을 만나 의견을 듣고 주 계량기(수도과 설치)와 원룸으로 가는 개인 계량기를 확인함(원룸 및 상가건물로 급수되는 수도를 다 잠근 후 주 계량기를 확인한 결과 계량기가 돌지 않고 있었음)
- ○○○○소를 방문하여 팀장과 요금부과 주무관에게 현지 방문했던 상황 및 민원 내용을 설명하고 누수보다는 계량기 오작동 확률이 높음을 설명하였고 하고 팀장과 담당 주무관도 이해를 함.

□ 판단

가. 관련법령

- 「아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32조(사용수량의 인정), 제33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나. 판단내용

- 2021. 7. 9. 아산시 ○○읍 ○○로 ***번길 **번지 다세대주택(1층 상가, 나머지 원룸)에 아산시 ○○○○소 점검원으로부터 수도사용량이 △△톤 넘게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 신청인이 △. △△에 확인한 바

주 계량기의 누적 사용량이 ■■톤으로 6월 사용량이 ●●톤으로 **년 년간 사용량이 ▲▲톤으로 **년 *월 한달 사용량이 전년도 1년 사용량의 2배가 넘는 사용량으로 측정되어 신청인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 신청인은 7월 중순 경 아산시 ○○○○소를 찾아가 민원을 제기하면서 계량기 오류 가능성의 의견을 제시 하였으나 ○○○과 담당자는 아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33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에 규정된 “수도사용자들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고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는 규정을 설명하였는데 신청인은 신청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행정편의 주의 입장에서 업무처리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매우 불쾌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 수도 검침 시 특별히 많이 검침 되었다면 ①실제로 사용하였을 경우, ②주계량기 안쪽에서 누수가 된 경우, ③주 계량기의 오류가 있는 경우를 나누어 볼 수 있는바

①번의 경우 주 계량기 안쪽에 개인이 설치한 계량기의 수도검침량의 합이 주 계량기의 검침량과 전혀 맞지 않고 통상적인 수준보다 너무 많이 검침되었기 때문에 검침량만큼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것이고

②번의 경우도 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고 난 후에 ○○○○소에서 7. 23. 현지에 출장하여 계량기 안쪽에서 모든 건물에서 수도를 잠그고 주 계량기를 살펴본바 계량기가 움직이지 않았고, 시민옴부즈만도 8.5. 현지 출장하여 건물 안에 있는 모든 수도를 잠그고 새로 교체된 계량기를 점검한바 계량 바늘이 움직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누수가 되지는 않고 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③번의 경우와 같이 주 계량기의 오작동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 실제로 통상적인 수준의 수도 사용량이 아닌데다가 현장 확인한 바에 의하면 누수로 인한 것으로 추정할 만한 어떤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누수가 아니라고 판단할 이유가 상당하므로 계량기의 오작동 가능성이 훨씬 더 커 보인다.
- 또한, 담당 공무원은 민원을 응대함에 있어 “국민,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만 한다.”는 6대 의무의 하나인 친절·공정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했으나 업무내용을 설명함에 있어 민원인의 불쾌감을 조성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 또한, 신청인 입장에서 볼 때 특별한 이유도 없는 상태에서 상식선인 수준이 아닌 평상시의 2년치 수도사용량을 넘는 검침이 한달치 사용량보다 많이 너무 많이 검침되었기에 수궁할 수 없었을 것이고, ○○○○소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 이의를 제기 했을 때에 친절하고 공정하게 안내를 하였다면 시민 옴부즈만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 결론

- 아산시장(○○○과장)은 「아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32조(사용수량의 인정)의 단서규정에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나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는 규정에 의거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된 사용수량이 아닌 합리적인 방법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의하여 정정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 수도관련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더욱 친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친절교육을 강화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배수관 관로 변경 요청 및 건축허가 준공 이의- 의견표명

□ 민원 요지

- ○○면 ●●리 소재 ***** 배수관 피해로 인한 배수관 관로 변경 당시 허가된 건축 준공을 재심의 요청

□ 신청 취지

- 2018년 아산시 ○○면 ●●리 ***-** 소재 주변의 ***** 허가 시는 소유주에게 승인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건수로 이외 다른 오염수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 준공이 이루어짐
- 준공 이후 주변 ***** 관계자가 건수로로 오·우수 배수관으로 사용하여 논으로 오·우수가 유입되어 논이 오염되고, 집중우기로 인해 발생한 우수로 논이 훼손되기도 하였음. **과에서 오수처리시설이나 방류수를 한 번도 점검하지 않고, 건축 허가 준공 후 관리 등 관리청에서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여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음.

□ 피신청인 의견

- 최초 개발행위 허가 시 기존 배수로 사용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였으나, 준공 이후 우오수 유입으로 피해가 발생한 바가 있으며,
- 2021. 5. ○○○과에서 하수관 처리시설 공사 완료하여 오수 유입 문제를 해결한 상태이며
- 기존배수로 우회하여 달라는 의견에 대하여는 ○○면 ●●리 ***번지의 기존 배수로는 예전부터 공용으로 사용된 배수로로 현장 여건상 배수로로 우회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해당 필지 아산시 ○○면 ***-*번지 외 *필지는 2018. 6. 허가도면과 적합하게 시공하여 준공 처리된 사항으로 준공 재심은 불가함

□ 사실관계

〈발생원인 및 진행 관계〉

- 발생원인 : *****에서 방류하는 오·오수를 기존 토공배수로에 연결한 상태로 개발행위 준공처리를 하여 신청인인 토지(○○면 ●●리 ***번지)에 피해 발생
- 사실관계 : 최초 개발행위 허가 시 기존 배수로 사용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였으나, 준공 이후 우오수 유입으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

〈그동안의 추진상황〉

- 2017. 5. : 단독주택(다가구) 및 진입도로 부지조성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협의)
- 2018. 6. : 개발행위 준공처리
- 2020. 12. : 2020. 8. 아산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발생으로 배수로 논둑 정비하였음
- 2021. 2. : 준공 이후 우수와 오수 유입으로 토양오염 민원이 발생하여 기존 배수로 일부에 흡관 설치
- 2021. 5. : ***과에서 하수관 처리시설 공사완료로 오수 유입 문제 해결
- 2021. 9. : 배수관 피해로 인한 배수관 관로 변경요청 및 건축허가와 준공 재심건에 대한 고충민원 접수 (신청인 → 시민옴부즈만)
: ○○면 ●●리 ***-**번지 주변 *** 현장을 방문하여 대리인과 그동안의 민원사항을 경청하고 현장을 살펴봄
: ○○○○관 자료 요구(시민옴부즈만 → ○○○○관)
- 2021. 10. : ○○○○관으로부터 시민옴부즈만 고충민원 자료를 받음 (○○○○관 → 시민옴부즈만)

□ 판단

- ○○면 ***리 △△△ 이장에게 알아본 바 전원주택부지 일부는 신청인이 매도한 사항이 있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전원주택 및 진입도로 부지의 배수로(현행 배수로) 사용에 대한 동의를 해 주었던 상태에서 2018. 6. 허가도면과 적합하게 시공하여 준공처리된 사항이고 공무원의 불법·부당행위가 없었으므로 준공 재심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됨.
- (주)**의 흙관 재설치 요구 건에 대하여도 2018년 6월에 배수사용동의서 및 수리계산서를 첨부하여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협의)를 획득한 사항이며, 우수 유입에 대한 토양오염에 관련해서도 2021. 5. ○○○과에서 사업을 완료하였기에 토양오염에 관한 민원은 해결되었다고 판단되며, 기존에 배출되는 우수로 인한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한 흙관 추가 설치는 업체 측에서 어렵다고 하고 있어 업체 에게 흙관 설치를 강제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만, 신청인의 농지 윗부분에 ***** (단독주택) 여러 채가 건립되어 있고 도로 등이 포장되어 있으므로 많은 비가 올 경우 우수가 토양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사용승락을 받은 배수로가 범람 될 가능성은 항상 있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추후에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면과 상의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민원 해소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결론

- 향후 마을 주민들의 의견 수렴 및 ○○면과 상의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을 통해 신청인의 농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결방안을 강구 할 것을 의견 표명한다.

이행강제금 일부 부당 부과 이의 - 합의·조정

□ 민원 요지

- ○○동 ●●-●●번지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 및 기 납부한 이행강제금 반환 요구

□ 신청 취지

- 1999. 6. 19. 위반건축물 추인을 위한 아산시 ○○동 ●●-●●번지 건축(대수선) 신고와 관련하여 아산시는 지붕 부분이 도로쪽 건축선을 침범했다고 반려했으나, 건축물이 건축선을 침범한 이유는 △△년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아산시에서 부당하게 지적선을 변조하였기 때문이고 변조된 지적선을 사실과 같게 복원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신청인이 제출한 건축(대수선)신고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임.
- 또한 이행강제금의 1~3회분(2000~2002년)도 상속문제 때문에 본인 모르게 가족인 △△△이 납부를 했고, 그 후 ○○과에서 관리하는 위반건축물 관리대장에 “3회 부과로 종결”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후에 3년 동안 부과하지도 않아 종결처리된 것으로 믿었는데 △△년 다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미수납됨에 토지가 압류된 것도 최근에 알게 되었음.
- 또한, □□-□□, □번지 쪽에서 1969년 구획정리 이전부터 *** 도로를 현재까지 무단 점유상황을 알고 있기에 아산시의 행정이 불법 행정이라 일관성있게 주장함.
따라서 이행강제금 부과도 취소하고 기 납부한 이행강제금도 돌려주기 바람.

□ 피신청인의 의견

- 신청인은 위반건축물(주민신고)에 대한 적발과 고발(1999. 10.)후에 추인을 위하여 2000. 6. 19. 건축(대수선)신고를 제출하였으나 건축선 침범을 이유로 반려된 바 있으며, 그때부터 지금까지 신청인은 건축선을 침범하지 않았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잘못된 것이라 주장하면서 충청남도과 아산시에 고충민원을 제기하고 있음.
- 1999년 당시 불법대수선 행위자로 신청인이 고발 조치 된 건으로 ○○○○과의 경계복원 측량과는 별개로 위반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제79조에 의해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같은 법 제80조 및 「아산시 위반건축물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처리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임.
- 다만, 신청인이 이행강제금을 3회(2000~2002년) 납부 후 3년간(2003~2005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아 종결처리가 된 것으로 알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행정조치가 유연하게 연결되지 못한 부분은 있으며, 2006년 다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미납부됨에 따라 토지가 압류된 것을 최근에 인지했다는 신청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당시 등기 우편 수신여부 및 공시송달 등에 대한 확인은 현재 어려운 상태임.
또한, 2006년과 2008년에 이행강제금이 미수납되어 부동산을 압류 및 결손처리 된 사항에 대하여는 일관성 있는 행정 처리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음.
- 이행강제금의 부과 목적은 불법 부분을 해소하는 것으로 상기 민원의 경우 2000년~2002년에 걸쳐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1~3회분은 납부 하였으며, 2016년 위반건축물이 철거 후 개축되어 불법 부분은 조치 완료된 상태임. 불법 부분이 해소된 상태에서 과거 일부 체납(4회)된 이행강제금의 납부가 실효성이 있는지는 검토해 볼 사항임.

□ 사실관계

○ 아산시(○○과) 행정조치 내역

- 1999. 8. 16. 위반건축물 적발(주민신고-불법대수선)
△ 2차례 시정명령(건축주 △△△, 임차인 ○○○)
△ 미시정에 따른 행위자(○○○) 고발조치(**. **. **)
- 2000. 6. 19. 건축(대수선 신고서 제출)
- 2000. 6. 21. 건축(대수선) 신고서 반려(건축선 침범)
- 2000. 11. 9. 이행강제금 부과(1회 금 △ 원 - 수납)
- 2001. 11. 15. 이행강제금 부과(2회 금 △ △ 원 - 수납)
- 2001. 11. 16. 이행강제금 부과(3회 금 △ △ 원 - 수납)
△ 내부분서인 위반건축물 관리대장에 **(3회부과로 종결)**로 기재
- 2006. 8. 17. 이행강제금 부과(4회 금 △ *원 : 미납)-(결손)
- 2007. 6. 4. 이행강제금 부과(5회 금 △ △ *원 -미납)
△ 천안시 ○○읍 ○○리 ●●-●번지 토지압류(**. **. **)
- 2008. 5. 이행강제금 부과(6회 △ △ △ 원 - 미납 - (결손)
- 2011. 4. 이행강제금 부과(7회 금 △ △ △ *원 - 미납)
△ 천안시 ○○읍 ○○리 ●●-●번지 토지압류(**.*. **.)
- 2012. 10. 이행강제금 부과(8회 금 △ △ **원 - 미납)
△ 천안시 ○○읍 ○○리 ●●-●번지 토지압류(**. *. *.)
- 2013. 12. 이행강제금 부과(9회 : 금 △ ***원 - 미납)
△ 천안 ○○동 ●●●-●●번지 토지압류
- 2016. 3. 기존 건축물 철거 후 개축(사용승인)

□ 판단

가. 관련 법령

- 「건축법 시행령」제115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비)
- 「행정기본법」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

나. 판단 내용

- 아산시에서는 1999. 8. 16. 불법건축물로 주민신고 된 건에 대하여 2차례 시정명령 미이행으로 고발을 하였고, 고충민원 신청인 ○○○은 벌금을 납부한 후에 2000. 6. 19. 추인을 위하여 건축물 대수선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건축선 침범(도로경계선 약 40cm)을 이유로 대수선 신고서를 2000. 6. 21. 신청인에게 반려한 바 있으나 당시 위반건축물은 생활 불편 해소 차원에서 도로경계선을 침범했다고는 하나 공중에 대한 피해는 경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 신청인은 ●●-●번지 전체가 1969년 구획정리가 된 후 북쪽으로 약 1.8m 밀려 70년~80년대까지 건축이 된 지역이고, 당시 구획정리 전의 건축물(◆◆-◆◆번지)이 북쪽으로 ●●-●번지가 침범됐고, ○○-○, ◆번지는 1979년경까지 국유지(****)였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 도로인 것처럼 사용되고 있으나 사실은 남쪽(철도쪽) ***도로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면적변동은 없으나 지적 변조의 근거가 되었다고 2000년 6월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1969년도 구획정리사업으로 완성된 지적선과 근래 항공촬영에 의한 것과 비교해보면 일정부분 전체의 건축물이 약간씩 밀려서 건축된 곳도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분(△△. △. △△ 전 ○○면장 ▲▲▲ 면담)도 있다.
- 또한, 신청인 ○○○은 위반건축물(○○동 ●●-●●)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1회 △원, 2회 △△원, 3회 △△△원의 이행강제금은 이미 납부(납부된 이행강제금은 ○○○ 본인이 납부한 것이 아니라 압류된 상속재산의 매도 과정에서 신청인과 같은 상속인 오빠 ■■■이 신청인 모르게 납부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1회~3회분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후에 ○○과를 방문 했을 시 이행강제금 3회 부과로 종결할 수 있는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이 아님에도 건축법 시행령 115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에 의한 위반건축물관리대장에 “3회 부과로 종결” 이라고 적혀있는 것을 신청인이 확인한 상태에서 2003년, 2004년, 2005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아서 신청인이 이행강제금 건에 대해 종결처리가 된 것이라 믿도록 하였다.

- 2006. 8. 부과됐던 이행강제금(4회 금 △ △ 원)과 **. *. **. 부과된 이행강제금(6회 금 △ △ △ 원)은 결손처리하고 2007. 6. 부과된 이행강제금(5회 금 △ △ 원만 천안시 ○○읍 ○○리 ●●-●번지 토지를 2009. 1. 압류한 것에 대하여는 당연히 2006년과 2008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압류했거나 아니라면 함께 결손처리를 하여야 했으나 일부만 압류하고 일부만 결손처리를 한 것은 행정 처리의 일관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 또한, 불법행위를 한 자가 자진해서 시정할 때까지 계속해서 금전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불법행위를 해소할 목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바 이 위반건축물은 2016. 3. 31. 기존 건축물 철거 후 개축하고 사용승인을 득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목적이 이미 달성된 상태이다.
- 특히 2000년부터 현재까지 거의 20여 년 동안 아산시와 충청남도에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가 잘못되었으니 취소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제기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아산시장, 국장 등을 수시로 찾아 항의 민원을 제기하여 업무에 관련됐던 수많은 공무원들이 민원 응대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과의 이행강제금 부과 또한 원천적으로 불법이라고 판단할 증거는 확인할 수 없으나, 행정 내부 문서에 “3회 부과로 종결” 이란 기재한 문서를 민원인이 보도록 하고 3년 동안 부과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 처리가 종결된 것으로 믿게 한 상태에서 다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부분도 있고, 위반건축물이 철거된 상태에서도 계속되는 고충 민원으로 행정낭비와 향후 지속될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미납부된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부과를 취소하고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신청인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의 고충을 다같이 해결하는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더 부합되는 것이라 판단된다.

□ 결론

- 신청인의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피신청인의 어려움과 행정낭비, 사회적비용을 줄이기 위해 미납된 이행강제금 부과와 압류처분을 취소하도록 **합의조정** 한다.

부동산 거래 신고 지연 과태료 부과 이의 - 합의·조정

□ 민원 요지

- 부동산거래신고에 따른 추가 지연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함으로 과태료 경감 처리 요청

□ 신청 취지

- 신청인은 ○○일반산업단지 사업승인을 받아 공사를 하고 있으며 산단 내 공동주택용지 4블록을 ■■■건설을 매수인으로 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20. 7. 4.블록 중 1블록을 최초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고 같은 해 12월에 나머지 3블록의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당초 부동산 거래신고 업무를 맡고 있던 주무관에게 “지적 정리전 사업장 내 공동주택용지가 모두 동일 물건이므로 1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고 구두 안내를 받음.
 하지만 2021. 3. 경 최초 신고한 1블록과 이후에 신고한 1블록은 동일 물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추가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아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민원을 제기함

□ 피신청인의 의견

- (○○○○과) 부동산 거래신고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거하여 신청인 (주)○○○○산단은 (주)○○건설과 2017. 4. 14. 매매계약을 맺은 4블록에 대해 거래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등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시장에게 신고를 해야하는데 1블록은 2020. 7. 9.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였으나, 나머지 3블록은 2020. 12. 11. 거래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 일자가 다르므로 거래 위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사료됨.

□ 사실관계

<아산시 ○○○○과 행정조치 내역>

가. 아산시 ◇◇면 ◇◇리 가 D1-1 (1블록)

○ 부동산 거래신고 현황

- 2020. 7. 9. : 계약신고 (주)○○○산단→ (주)○○건설 3년 26일 지연
- 2020. 7. 9. : 계약해제신고 (주)○○○○산단→ (주)○○건설
- 2020. 7. 9. : 계약신고 (주)○○○○산단 → (주)***** 3년 26일 지연

○ 과태료 부과경위

- 2020. 10. 19. : 부동산거래 지연신고 과태료부과 검토보고(7~8월분)
- 2020. 10. 20. : 부동산거래 지연신고 과태료 사전통지
- 2020. 11. 18. : 부동산거래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의견서 제출
- 2020. 11. 18. :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의견서 접수 검토보고

○ 과태료 부과현황

- (주)○○○○산 단: △ 만 원(*만 원, **만 원)
- (주)○○건설: △ 만 원
- (주)*****: △ 만 원

나. 아산시 ◇◇면 ◇◇리 가 D1-2, D2-1, D3-2

○ 부동산 거래신고 현황

- 2020. 12. 11. : 계약신고 (주)○○○○산단 → (주)○○건설 - 3년5개월28일
지연

○ 과태료 부과경위

- 2021. 4. 6. : 부동산거래 지연신고 과태료부과 검토보고
- 2021. 4. 8. : 부동산거래 지연신고 과태료 사전통지
- 2021. 4. 22. : 지연과태료 통보 지연 인지에 따른 납기일 연장요청
- 2021. 4. 23. : 과태료 부과 납부기한 연장 통보
- 2021. 4. 29. : 부동산거래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 통보에 따른 의견서 제출
- 2021. 4. 30. : 시민옴부즈만 민원접수로 민원 처리 결과 통보시까지 행정
처분 유예

○ 과태료 부과현황

- (주)○○○○산단: 240만원
- (주)○○건설: 120만원

○ 신청인 (주)○○○○산단은 「충청남도 고시 제2026-**호(**.*.**.)에 의해 충청남도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내 공동주택용지 4블록(◆◆면 ◆◆리 가D1-1, BL D1-2, BL D2-1, BL D3-2)에 대해 (주)○○건설을 매수인으로 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따라 거래당사자는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아산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2020. 7. 9.까지 신고를 하지 않았다.

○ 신청인은 4블록 중 1블록(D1-1)이 (주)○○건설에서 자회사인 (주)****로 2020. 6. 권리의무승계계약이 이루어지자 4블록 중 1블록(D1-1)만 2020. 7. 9.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였음

- 2020. 10. : 부동산 거래 신고 과태료 사전통지
- 2020. 11. : 부동산 거래지연 신고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의견서 접수 검토 보고 후에 (주)○○○○산단에 △만원, (주)*****에 △만원 과태료 부과

○ 또한 신청인은 4블록 중 3블록(BL D1-2, BL D2-1, BL D3-2)에 대해 2020. 12. 11. 부동산 거래 계약신고를 하였으며 부과경위를 살펴보면,

- 2020. 12. 11. : 계약신고 [(주)○○○○산단 → (주)○○건설]
- 2021. 4. 6. : 부동산거래 지연신고 과태료부과 검토보고

□ 판단

가. 관련 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8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나. 판단 내용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투기, 탈세의 원인 중 하나인 이중 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부동산 계약 관행을 방지하여 투명한 계약과 거래질서를 확립할 목적으로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당시 60일) 이내에 거래 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매도인·매수인 공동의무) 하도록 되어있다. 신청인은 2017. 4. 14. ◇◇면 ◇◇리가 D1-1, BL D1-2, BL D2-1동, BL D3-2 토지 4블록을 (주)○○○○산단이 매도한 계약을 체결하고 60일 이내에 아산시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하나, 1필지(가D1-1)는 2020. 7. 9.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고 나머지 3필지(BL D1-2, BL D2-1, BL D3-2)는 2020. 12. 11.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였으므로 각각 부과된 아산시의 과태료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다만, 신청인은 동일 거래 토지 중 권리 의무승계약이 이루어진 1블록만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고 나머지 3블록은 추후에 신고를 하면서 고의로 신고 일자를 다르게 한 것이 아니며, 토지개발 지구인 동일 지구 내 토지 거래로 계약일 및 매도·매수인이 동일한 거래이면 신고일이 달라도 1건의 과태료가 나오는 줄 알고 착각하여 업무를 처리하였고, ○○○○과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지적 정리 전 사업장내 공동주택용지가 모두 동일 물건이므로 1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라는 구두 안내를 받았고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 공무원의 언행에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거 업무를 처리하기를 바라는바 관련 규정에 의거 감경할 수 있으면 감경의 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한다.

□ 결론

-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는 부동산 지연 신고 과태료를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과태료부과기준1에 따라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이 가능 하도록 되어 있으며, 「질서 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에 의거 자진 납부 시 20%의 감경이 가능 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에 의하여 일부 감경하여 부과하도록 합의 조정한다.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등 절차 이의 - 조정

□ 민원 요지

- ○○읍 ○○리 산◆◆-◆번지 소재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관련 해당 부서의 소극적인 업무 처리에 대한 이의제기

□ 신청 취지

- ○○읍 ○○리 산◆◆-◆(○○○)번지 소재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와 관련하여 2020년 이전에 발생한 위반건축물 행위에 대해서는 전달 받은 내용이 없었는데, 그때 즉시 부과하지 않고 지금에 서야 합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예고)하여 비용부담 가중 발생하여 이의제기하며,
- 향후 위반건축물 시정 처리 절차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안내해 주지 않은 해당 부서의 소극적인 태도에 민원을 제기함

□ 피신청인의 의견

- (○○과) 해당 사건은 ○○리 산◆◆-◆번지에 불법건축물 단속을 요구하는 생활민원 신고로 인해 현장조사(2020. 6.) 과정에서 적발된 부분이며, 위반행위 및 행위시기를 판별하여 처분사전통지하였음. 또한 건축법 제79조 및 시행령 제115조에 근거하여 최초 적발일을 기준으로 행정조치하였음.
- 시정의무자인 신청인 ○○○은 직접 ○○과를 수 차례 방문하여 ○○과 담당자가 위반사항과 시정방법을 여러 차례 안내하였고,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전 위반사항을 시정하겠다고 하였음.

□ 사실관계

○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행정조치 내역(아산시 ○○과)

- 2020. 6.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 송달
(토지소유주, △△△ 외 2인)
- 2020. 7. : 의견제출서 제출
(토지 무단점유자인 신청인 ○○○에게 시정의무자 변경 요청),
해당 점유 관련 소송중임을 확인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 송달
- 2020. 9.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 2020. 11. :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2021. 1. 11. : 시민옴부즈만 권유로 의견제출서(시정계획 및 시정기간 연장
요청서)작성 제출
- 2021. 1. 12. : 위반건축물 시정기간 연장 알림

○ 위반건축물 현황

위치	시정 의무자	위반행위 및 건축물					
		구분	위반 면적	구 조	용 도	행위시기	위반행위
○○읍 ○○리 산◆◆◆ (○○○)	○ ○○	①	130㎡	철파이프	창고	2011	불법신축 (건축법 제14조)
		②	18㎡	컨테이너	창고	2015	불법가설건축물축조 (건축법 제20조)
		③	8.75㎡	경량철골	창고		불법증축 (건축법 제14조)
		⑥	4.6㎡	컨테이너	창고	2020	불법가설건축물축조 (건축법 제20조)
		④	18㎡	컨테이너	창고	2016	불법가설건축물축조 (건축법 제20조)
		⑤	18㎡	조립식패널	창고	2018	불법신축 (건축법 제14조)
합계			197.35㎡				

- 고충민원 상담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민원 제기
(신청인 ○○○ → 시민옴부즈만) ' 21. 1. 5.

- 시민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접수 후 ○○과 담당자와 유선상으로 고충민원 접수 사실을 알린 후, 시민옴부즈만 사무실에서 민원 관련 정황을 파악
 - 면담 결과 해당 민원인은 감정이 격해져 ○○과 담당자의 의견 내용을 듣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에 시민옴부즈만은 민원인을 직접 대면하여 의견 청취 및 민원 해결 방안에 대해 설명함
 - 그리고 ○○과 담당자와 민원 대책 방안(시정 연장 가능)에 대하여 협의함
- 민원현장 확인(신청인, 시민옴부즈만 등 3명) ' 21. 1. 8.
 - 위반건축물 위치, 규모, 구조, 내부시설 등 확인
 - 민원인과의 면담에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의사는 있지만 당장은 코로나 19 등 경제적인 부담과 겨울철 이동 곤란 등 위반건축물 처리의 어려움을 호소
 - 이에 시민옴부즈만은 민원인에게 시정기간 조정·연장 등 실질적인 시정이 가능하도록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설득 권유
- 시민옴부즈만은 위 민원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과에 자료를 요청함 (2021. 1. 11.)
- 민원인 위반건축물 시정기간 연장 요청 의견서 제출(' 21. 1. 11.) → 위반건축물 시정기간 연장(3개월) 민원인에게 통지(○○과, 2021. 1. 12.)

□ 판단

가. 관련 법령

- 「건축법」 제80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나. 판단 내용

- 이 민원에 대해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바, 피신청인(아산시 ○○과)은 「건축법」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 내용 의견제출 통지,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시정명령 이행촉구,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안내·고지 하

였으나, 민원인은 시 행정에 대한 불만과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 강제금 부과 예고”에 대하여 ‘예고’로 이해가 아닌 ‘바로 시행’으로 이해하여 이행강제금이 바로 부과되는 것으로 오해하여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에 대하여 시민옴부즈만은 아산시(○○과)와 대책으로 “위반건축물 시정기간 연장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협의하였고,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현장 방문 조사를 통해, 민원인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실행 가능한 세부 시정계획서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도록 설득, 조정 함.
- 「건축법」제80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 기간을 정하여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등을 규정

□ 결론

- 시민옴부즈만은 피신청인(○○과)과 대책으로 위반건축물 시정 기간 연장 관련 협의 후, 신청인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실질적인 시정계획서(의견제출서 : 기간 연장 포함)를 제출하도록 설득, 협의 조정함.



<시민옴부즈만 고충민원 현장 조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 중 이행강제금 부과 이의 - 합의조정

□ 민원 요지

- 무허가축사 적법화 진행 중(미납 이행강제금 납부 중), 수해 피해로 납부 기간을 연장한 약정 기간에 이행강제금이 부과 이의

□ 신청 취지

- 신청인은 정부합동「무허가 축사 개선방안」정책으로 아산시의 적법화 사업 대상에 포함되어 적법화를 진행 중인 상태에서 2020년 여름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무허가 축사로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밀린 이행강제금을 열심히 납부하고 있는 중인 바, 분할 납부 약정 기간 중인 2021년에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부담이 너무 크고 부당하다는 이의 제기

□ 피신청인의 의견

- 아산시 A부서
 - 신청인은 무허가 축사(○○읍 ○○리 ***-* 외 *필지) 적법화를 완료하기 위하여 아산시에 분할납부 계획서를 제출하고 분할 납부하도록 약정하였으나, 약정 기간중인 2020년 집중호우로 인해 해당 축사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피해사실 확인서 확인) 그로 인해 납부 기간 변경을 요청하여 아산시는 분할 납부 보완 기간 연장을 허용
- 아산시 B부서
 - 「건축법」제11조 위반 불법 신축한 건축물로 위반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2차에 걸쳐 시정명령 하였으나, 현장 확인 결과 아직 미시정 상태로「건축법」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 사실관계

○ 아산시 A부서

- 적법화 진행을 위하여 이행강제금 분할 납부를 허용, 이행강제금 전액 납부 및 해당 무허가축사의 적법화 동시 완료하는 것이 타당함(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및 건축허가 보완 완료 기간 연장 약정 함)

○ 아산시 B부서

- 신청인이 해당 고충민원 조사기간 중 이행강제금을 4회 6천 여만원을 분할하여 납부 함을 확인
- 추가 이행강제금 부과(2021. 5월)

□ 판단

가. 관련 법령

- 「무허가축사 적법화 합동지침서」(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소방청, 산림청 등, 2018.)
- 「건축법」 제11조, 제79조, 제80조, 제80조의 2
- 「건축법」 제69조의2
- 「무허가축사 적법화 적극행정 우수사례집」(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등, 2019)

나. 판단내용

- 국가 주요 정책 사업으로 정부합동 범정부 차원의 전국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3단계로 구분 3단계는 소규모 농가 적법화 - 소규모 무허가 축사 이행강제금 감경 기간을 '24. 03.까지 연장
- 아산시(허가담당관)는 정부 방침에 따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 중, 소규모 3농가에 대하여 이행기간을 연장('21. 12. 31)하였으며 신청인 축사는 이 소규모 농가에 해당하며, 적법화지침에 따라 이행기간 추가 부여 필요에 포함 필요(「아산시, 적법화추진 결과보고」)

- 아산시는 신청인에게 미납 이행강제금 분할납부 계획을 받아 납부 완료 기간 연장을 허용 함('21. 07월까지)

□ 신청인 축사 적법화 과정 중 2020년 자연재해(집중호우)로 피해 발생

- 2020년 한반도 전역에 대규모 폭우로 재해 발생, 8월에 충청남·북도, 수도권 등 중부지방까지 집중호우 확대 수천 건 시설 등 피해 발생
 - 이 시기 해당 신청인은 집중호우로 피해 발생, 육계 4만 7천수가 죽었으나 무허가 시설이어서 보상 대상에서 제외 됨
 - 집중호우 피해로 수입이 없는 신청인은 호우로 축사에 발생한 피해액(사망 병아리수, 사료비 등)의 1/2을 회사에 내도록 위탁계약 되어 있어 매달 250만원씩 위탁업체에 갚아 나가고 있는 중임

2020. 8월. 수해 피해(사망 병아리)	2020. 8월. 수해 피해 현장 자원봉사
	

□ 이행강제금 부과 취지에 미부합

- 「건축법」 제80조에서 이행강제금은 시정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
- 「건축법」 제69조의2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며, 또한 이행강제금의 목적이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을 회수하여 위반행위를 이행하도록 하는 데 법 규정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소극 행정으로 보여질 수 있음
- 아산시(0000관)와 적법화 진행 약정에 따라 신청인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과정에서 아산시의 다른 부서(@@과)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한 것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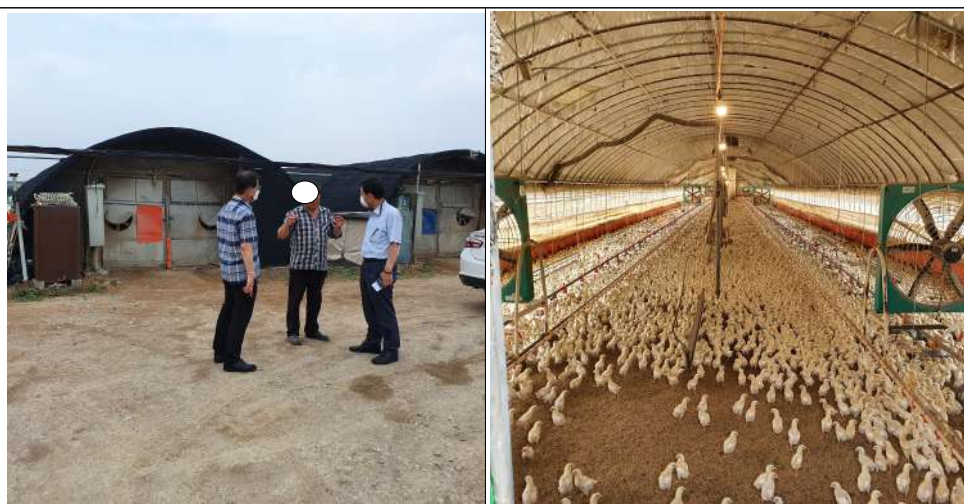
□ 측사 적법화 과정에서의 행정 혼선 야기

- 아산시 A부서에서는 적법화 진행 과정으로 이행강제금을 분할 납부하도록 약정(‘20년 8월 집중호우 피해로 약정 변경을 허용함)하여 진행하고 있는 중, B부서에서 약정기간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간에 추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 한 것은 아산시의 부서간 행정 혼선으로 보여질 수 있음
- 아산시B부서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 통지, 현장확인 등 절차를 통해 이행강제금을 부과 함, 이행강제금 분할 납부 약정(수해 피해로 기간 연장 포함) 기간에 이행강제금 부과 적절성 제고

※ (참고)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 의견표명」(국민권익위원회 ; 주택건축민원과) 경기 00시 @@구 000-0번지 상의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

□ 결론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사업은 범정부 차원의 주요 진행 사업이며, 위에서 제기된 고충민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 적법화 정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신청인은 아산시와의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며, 피신청인은 미납 이행강제금을 충실히 완료하도록 독려하고, 재해 피해로 약정 기간 중 부과된 이행강제금 일부를 감액토록 하여 소규모 농가의 적법화 사업이 원만히 수행되도록 합의조정함



<시민옴부즈만 민원 현장 조사>

2개 시 기초생활수급장애인 복지 지원 요청 (상담해결) ※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 과제

□ 고충민원 경로

- 2개 시(아산시, ○○시)에 걸쳐있는 고충민원으로 아산시 시민옴부즈만에서 상담 후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 과제로 선정(아산시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 상담- 권익위로 고충민원 신청)

□ 민원 요지

- 신청인은 60대 장애인으로 모친도 부양해야 하나 생활에 어려움이 많으니, 주거, 생계 등 도움 요청

□ 신청 취지

- 저는 하지절단 장애인으로 1997년 8월부터 ○○시 장애인 임대아파트에서 팔순 노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최근 어머니의 심각한 우울증으로 같이 살며 모시지는 못하고, 저는 아산시(□□읍에 실거주)에서 실 거주하며 일을 하고 있는 이중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과 장애로 고통받는 어머니와 60대 장애인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에게 생계, 복지 분야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 상담 해결

- 고령인 신청인 어머니의 현 주거 및 생계 지원 대책 등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과 아산시 시민옴부즈만이 관련 한국△△△△공사(대전충남본부) 함께 협의함. 계약해지 없이 모친이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피신청 기관의 의견이 제출되어 마무리함 (아산시 복지 지원 연계 - □□읍 협조)

연번	접수 방법	신청취지	처리결과
1	방문	· 신축건물 창문 빛 반사 관련 시정 요 청	· 현장 확인결과 빛 반사 정도가 심해 불편사항이 컸을 것으로 보였으며, 담당 부서와 감리, 건축사 등을 불러 민원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빛 반사의 피해가 없도록 빛 반사 방지필름을 붙이는 등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 후 안내
2	홈페 이지	· 국유지 포장 정비 요청	· 해당 부지 토지에 대해 금년도 공사시에 반영하 여 주위 환경에 어울리도록 정비할 수 있도록 관 련부서에 통보하였음을 안내하고 종결
3	방문	· 광역상수도 설치 요청	· 관련부서와 민원을 검토한 결과 내년도 추경에 예산 성립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원활한 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상담해결로 종결
4	읍면동	· 버스 정류장 이전 설치 요망	· 신청인이 주장하는 구간은 충청남도에서 관할하 는 지역이므로 시에서 처리할 사항은 아닌 것으 로 판단되며, 담당 부서에 민원 내용을 전달하여 향후 관련 부서 및 경찰서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정류장을 이전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 도록 조치 후 안내
5	방문	· 수해복구지역 엉터리 시공 조치 요망	· 직접 현장에 나가 수리되지 않은 부분을 확인하고 관련 부서에 통보하였으며, 농경지 역류방지 수문, 돌망태 등을 현장조치하도록 안내하고 종결
6	홈페 이지	· 시내버스 운행 횟수 증설 요청	· 담당 부서에 내용을 전달 후 '운행 횟수 증가는 어렵지만 현재 운영 중인 버스 노선 변경을 통해 운행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후 신청 인에게 안내하고 종결
7	읍면동	· ○○2통 도시계획 도로 지정 요청	· 현재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시 사 업부서와 협의하여 마을안길을 확포장할 수 있 도록 검토 예정이며 신청인에게 안내

주택건축 시 토지 기부채납 이의 - 심의안내

□ 민원 요지

- 주택 건축허가 시 진입로가 아산시에 과도하게 무상귀속(기부채납) 되었으니 구제해 줄 것을 요청

□ 신청 취지

- 신청인은 1997년 ○○동 ●●-●(595㎡) 단독주택(지상1층, 97.898㎡, 자연녹지-임야) 건축 시 도시계획 예정도로(대로3 - 12호)에 편입된 진입로(현, ○○동 ●●-●, 71㎡) 부지를 무상귀속(기부채납, 준공 후 분할하여 도로로 지목변경 하도록 조건)하는 조건으로 주택신축을 아산시로부터 허가 받음
- 그러나 당시 신청인은 한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건축사가 설계해 대로 제출해야 허가가 날 수 있다고 들어서 진입로 도로 폭에 대한 기준도 모른채 건축설계사가 설계한 그대로 시에 제출했다고 주장
- 이웃의 유사 건축물 허가 진입로의 경우 통상 무상귀속(기부채납) 너비를 4m 이하로 한다고 하는데, 신청인의 경우 다른 유사한 경우보다 진입로 폭이 넓게{71㎡ = 11m × 6.4545} 무상귀속(기부채납) 된 점은 과도하며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 이와 관련된 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구제해 줄 것을 요청하며 고충민원을 제기

□ 피신청인의 의견

- 민원 처리 경과
 - 1977. 2. (이전) 도시계획도로(중로*-*호)로 최초 결정
 - 1993. 3. 도시계획도로(대로*-**호)로 변경 결정

(이때 ○○동 ●●-●번지 도시계획도로에 포함 ; △ △ 년 변경 결정시 포함된 것으로 판단됨

- 1997. 3. 소규모건축물 등이 건축신고 및 신고필증, 토지형질변경 허가 조건에 건축물 진입로 부지에 대하여 무상귀속 조건 명시 확인
- 1997. 11. 건축물 사용 승인
소유권 이전, 아산시로 권리귀속(등기원인)
- 1997. 12.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
- 1998. 1. 아산시 등기 이전 접수(등기부등본 1*** - 1***-2*****)
- 2020. 7. 실시계획인가(아산시 고시 20**-****), ○○과에서 도시계획 도로(대로*-**호) 공사 준비 중으로

- 당시 주택의 신축에 따른 진입도로가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되어 있어도 기부채납을 제한한 지침 전 이루어진 사항임

□ 사실관계

- 시민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이 접수(2021. 4. 5.)된 후 *23년 전 자료조사 시작
 - ○○과 및 ○○○동 협조를 통해 기초 자료 수집 및 1차 현장 방문조사 실시: ○○○동 동장, 옴부즈만 2명, 옴부즈만 담당공무원과 함께 민원 장소 ○○동 ○○-○ 건축물 및 도로 현장 조사(2021. 4. 14.)
 - ○○과 2차 자료 제출 회신 (2021. 4. 26.)
 - ◎◎과를 통해 주택건축 시 관련 서류 사본 받음(2021. 4. 28.)
 - ○○과에 고충민원 관련 실태조사 및 의견 요청(2021. 5. 4.) → 개발행위에 따른 무상귀속(기부채납) 관련 당시 도시계획 및 관련 사례는 ㉠㉠㉠㉠과, 혹은 ◇◇◇◇관 소관이라고 답변(2021. 5. 7.)
 - ◇◇◇◇관에 이 민원과 관련 유사 사례 및 관련 자료 협조 요청(2021. 5. 11.)
 - ㉠㉠㉠㉠과(●●●●팀)에 도시계획(예정)도로(대로*-**호) 관련자료 등 협조 요청(2021. 5. 12.)

□ 판단

가. 관련 법령

- 「건축법」제2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 (구)「도시계획법」(2002. 2. 24. 법률 제6655호로 폐지 「도시계획법」(전문개정 2000.1.28 법률 제6243호)

제83조 (공공시설등의 귀속) ①행정청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행정청이 아닌 자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도시계획사업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청의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그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귀속)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 등 ;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 기반시설 기부채납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요구되도록 하며, 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한 기부채납(공공시설 무상귀속 포함) 요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공성의 확보와 정정 수준의 개발이익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사업자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도한 기부채납은 지양한다(제6절 2-6-1기반시설 운영기준).

나. 판단 내용

- 건축법상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또는 그 각 예정 도로를 말함(「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그리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도록 규정(「건축법」 제44조 제1항)
- 신청인은 1997년 ○○동 ●●-● 단독주택 신축 허가 과정에서 도시계획 예정도로(대로*~**호)에 편입된 진입로(현, ○○동 ●●-●) 부지를 무상귀속(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아산시로부터 허가를 받았으나,
-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에 건축물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당시 신청인은 한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건축사가 설계해 준 그대로 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주택건축이 급한 마음에 진입로 기준도 모르고 설계사가 너비 11미터로 설계한 그대로 아산시에 제출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는 점,
 -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당시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 이의제기를 하기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허가를 받기 위한 진입로를 **법정 기준**(도로 너비 4미터, 건축물 대지 2미터)으로 통상 진입로 면적을 최소화하여 신청하고 있으나, 당시 신청인의 경우 다른 유사 진입로 기준(너비)보다 넓게 책정되어 기부채납된 점이 있다.

- 부당 기부채납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개인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기부채납에 대한 제한 규정을 마련 시행 중(개발사업자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도한 기부채납을 지양하도록 국토부 방침) 인 점 등을 검토한 바 통상보다 과도하게 기부채납 되었다고 의심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 가능성을 집중 조사, 전문가 법률 자문 등을 검토·재검토한 결과 보상이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결론 (3개월 조사, 전문가 자문 등 신청인이 이해함)

- 신청인의 “기부채납된 진입로 토지 일부 보상 가능성”에 대한 조사 결과, 관련 소관 부서와 협의·재협의 진행 내용, 변호사·법학박사 등 전문가 자문 결과 등을 종합한 결과 “이미 기부채납되어 등기 이전이 완료된 토지를 다시 신청인에게 되돌려 줄 법적 근거 미비로 보상이 어려움을 최종 확인 하게 됨. 이러한 내용을 상세하게 신청인에게 설명 안내 공유 후 종결하는 것으로 최종 정리함



<시민음부즈만 고충민원 현장 조사>

심의(상담)안내

연번	접수 방법	신청취지	처리결과
1	방문	· 자경농민 농지등 취득세 감면 요청	· 현행법상 자경농민을 확인하는 서류를 충족 하지 못해 취득세를 부과할 수 밖에 없으며, 향후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등으로 구제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종결
3	읍면동	· 폐비닐 수거 창고 설치 요망	· 관련부서와 협의 결과, 토지주의 사용 승낙만 받은 상황에서 2억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설치하는 것은 다른 마을과의 형평성 문제에서 맞지 않다고 판단되어, 판단사항을 신청인에게 설명하고 안내.
4	읍면동	· 유기견보호소 주민 불편사항	· 해당 동물보호센터는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이전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센터 담당자에게 민원 사항을 통보하고 주변 청소 및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 하 였으며, 진행사항을 안내한 후 상담민원으로 종결
5	읍면동	· ○○아파트 상수도 설치 요망	· 신청인이 요청한 지역은 현재 상수도 설치 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며 상반기 안으로 설계· 준공될 예정임을 담당 부서에 통보 받았으며, 해당 내용을 민원인에게 안내 후 종결.
6	읍면동	· ○○천 하천 정비 요망	· 향후 지방하천 정비종합계획 상의 중기계획 지구로 하천 정비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음을 안내.

연번	접수 방법	신청취지	처리결과
7	읍면동	· ○○2통 노후화로 인한 택지개발 요청	· 현재 아산시에서는 2곳에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추가적인 사업추진은 어려우며, 향후 해당 지역의 종합적인 여건 및 변화를 지켜보며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해당 지역의 민간 도시개발사업 제안 시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안내.
8	읍면동	· ○○동 마을버스 운행 증설 요청	· 민원 검토 결과, 현재 신규버스 투입은 코로나로 인한 승객 감소 등 버스업체의 재정 여건 상 어려운 상황이며, 운행시간 및 횟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임. 대안책으로 해당 지역에 마중택시를 투입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을 안내한 후 종결.
9	방문	· 사회적 협동조합 부당 해고 구제 신청	· 민원검토 결과, 위탁기관과 신청인 사이의 고용 간의 문제로 판단되어 읍부즈만이 직접 조사하는 것보다 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구제 절차 및 신청 방법 등을 안내.
10	방문	· 고가도로 낙석으로 인한 자동차 피해 보상 요망	· 민원 조사 결과, 본 민원을 대상으로 국가 배상심의위원회에서 기각되었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패소한 사항임. 읍부즈만의 직무권한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인의 이해를 구하고 상담 종결.
11	우편	·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요청	·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반영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해당 부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안내 후 민원 상담 종결.

연번	접수 방법	신청취지	처리결과
12	방문	· 무허가 건축물 해체 방법문의	· 민원 조사결과, 신청인이 철거를 원하는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축물이었으며 안내 과정에서 담당 부서에서 적절하게 민원 안내를 하지 못하여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행정의 신뢰를 잃게 만들었음. 옴부즈만은 신청인의 현재 상태에서 건축물을 해체하는 절차를 설명 안내함.
13	방문	·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따른 재산세 면제요청	· 조사결과 개정된 지방세 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해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다만 사전에 충분한 안내 를 통해 민원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민원 응대할 것을 담당부서에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안내 후 종결.
14	방문	· 공영주차장 건설로 인근 거주자 피해 공사처리 요망	· 담당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인의 고충 해결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하여 유연관 등을 설치하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
15	읍면동	· 한해 대책용 관정 철거 요망	· 담당부서에 민원 사항을 전달하여 폐관정 철거방법에 대해 논의하였고, ○○읍의 건의를 받아 폐관정을 철거하기로 하였으며, 신청인에게 진행절차를 설명하고 종결함.
16	방문	· 공유수면 점용 사용 변경허가에 따른 피해 민원	· 신청인과 점용권자의 문제를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상담의견을 전달하고 종결.
17	읍면동	· 신정호 주변 신축 전원주택 관리 대책 요청	· 개인 사유지로 일괄 개발 관리는 규제사항이므로 현재는 어려움이 있으며 향후 정책 수립 시 검토여부에 대하여 안내하고 종결.

연번	접수 방법	신청취지	처리결과
18	유선	· 가설건축물 원상복구 요청	· 사인 간의 관계로 발생한 민원으로 신청인이 요구하는 시설물의 적법성 유무 확인을 위해 관련 부서에 안내하고 종결
19	홈페이지	· 민간도로 진입 통제 해결 요청	· 향후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수립 시 해당 도로가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관련 부서에 전달하였으며, 마을 주민과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읍부즈만이 중재노력을 할 것을 안내하고 종결
20	방문	· 어려운 이웃 도움 요청	· 사회복지 부서와 연계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신청인에게 사례관리자 지정을 통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21	이메일	· 오수관직관 공사 요청	· 자료 검토 후 불가피하게 공사를 시행하지 못한 사유 및 의견을 신청인에게 전달하였으며, 관련 부서와의 사업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읍부즈만이 중재할 것을 안내하고 종결
22	방문	· 축사 냄새 해결 요청	· 관련 부서에 약취 저감을 위한 조치 및 계도 하도록 통보하는 것으로 종결함
23	홈페이지	· 도로변 불법 주차 단속 요청	· 검토 결과 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니라 단속의 어려움은 있지만 방지책으로 차선규제봉 설치 및 차고지 밤샘주차 단속 등을 통해 불법주정차가 개선에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하고 안내 종결

불법 가림막 철거 요청 - 각하

□ 민원 요지

- 영업장 입구를 불법 가림막으로 막아 업무를 방해한 정황이 있으니 철거를 요구함

□ 신청 취지

- 前○○면장인 ○○○는 지역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이 사촌 ●●●와 공모하여 자신의 영업장 입구를 불법 가림막으로 막고 업무를 방해한 정황이 있으니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바임.

□ 피신청인의 의견

- 아산시 ○○면 ○○리 ▶▶▶-▶번지 내 설치된 가림막은 당초 (4m) 불법 건축물 축조로 시정명령하여 규정에 맞게 2m이하로 철거하여 시정완료 (「건축법」제83조 및 「건축법시행령」제118조에 근거) 되었으며, 2m이하는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이 아님에 따라 민원인이 제기한 영업방해, 가림막 철거 등은 민사적으로 해결할 사항으로 사료됨.

□ 사실관계 및 판단

〈불법 가림막 등 위반건축물 행정조치 진행사항〉

- 2020. 9. 현장 결과보고(상담민원으로 접수되어 현장확인하고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 함)
- 2020. 10.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건축물대장 기재알림
- 2020. 11. 위반건축물 시정재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2020. 12. 기간연장 요청 의견서 제출
- 2020. 12. 24. 위반건축물 시정기간 연장 검토보고(의견서 제출됨)

* 공작물 2m 이하로 철거 확인(시정완료)

* 의견서 제출에 따른 시정 기간 연장함(~ **. *. *.)

○ 2021. 3. 18. 위반건축물 행정조치 종결

○ 2021. 3. 31. 업무방해 행위를 하는 “가림막” 철거 국민청원 제기

〈고충민원 접수 후 읍부즈만 활동사항〉

○ 2021. 4. 9. 팩스로 고충민원 신청

○ 2021. 4. 9. ○○과 그동안 진행사항 및 관련자료 제출 협조(유선)

○ 2021. 4. 15. ○○면장에게 민원내용 전달

○ 2021. 4. 15. 신청인과 이해당사자인 ○○○씨의 위반건축물 현장확인
및 조치사항 관련 문서사본을 ○○과로부터 받음

○ 2021. 4. 16. 아산시 ○○면 ○○로 □□번길 □□ ◇◇◇◇◇◇◇◇◇◇ 현장을
확인한 후 고충을 제기한 신청인과 면담 (○○면장 동행)

○ 신청인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아산시 ○○면 ○○리 ○○○-○번지 ○○○의
사도와 근방 토지를 이용하여 건축물 신축에 활용하고 바로 뒤편에 있는
토지에 밭으로 사용하기 위해 농사용 흙을 가져다 부어 주기로 하였는데
신청인이 밭으로 사용할 흙을 부어준 것이 아니라 자갈 등이 섞인 흙을
부어 주어 갈등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신청인의 대화 태도에 마음이
상한 ○○○씨는 2020년 8월경 신청인의 건물 바로 앞 사도에 4m 높이의
가림막을 설치하여 서로 간에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고 하며,

○ 신청인은 8월 말 시청에 상담민원으로 위반건축물(불법 증축 및 불법공
작물 축조)로 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과에서는 2020. 9. 2. 현장
결과보고와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사전 통지를 하였으며 2020. 11. 9.
위반건축물 시정 재축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였고 2020. 12. 24.
위반건축물 2m이하로 철거를 확인한바 있음.

○ 2m이하로 철거된 가림막은 「건축법」제83조 및 「건축법시행령」제118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이 아님으로 법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기 어려우며 사인 간의 권리관계 사안으로 보임.

- 이 과정에서 신청인은 2020. 9. 2. 14:00경 ○○○씨의 큰 강아지가 며칠째 돌아다닌다고 112로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여 ○○○씨가 목줄을 착용하고 집안에 들어놓는 것으로 현장 종결사례 등 갈등 지속,
- 그리고 2020. 3. 31. “영업장 입구를 막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혐오스러운 ‘가림막’을 제발 철거하여 주십시오.”라는 국민청원을 게시하여 양 사인 간의 갈등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이며,
- 이에 시민옴부즈만은 현 ○○면장과 함께 민원 현장을 확인하고 신청인과 대화를 나눴으며 신청인은 신청인 건물 뒤쪽에 살고있는 ○○○씨가 상가건물 바로 옆에 흉한 가림막을 설치하여 많은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서로 대화로 해결하지 못하고 피해를 구제하고자 진정, 고발 등으로 인해 갈등의 폭은 더욱 커졌다고 판단됨.
- 전 ○○면장인 △△△이 사촌형 ○○○과 협의하여 가림막을 설치한 것은 아니고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 법률적인 조언만 있었을 뿐 ○○○이 감정이 상하여 임의로 설치한 것이라함
- 또한 시 ○○과장은 신청인에게 사도에 설치된 가림막을 철거와 관련하여 사인간에 감정이 격화된 문제로 대화를 통하여 잘 해결되도록 조언을 한 바 있으나 신청인이 거절하여 ○○과에서는 ○○○씨의 건축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이미 조치를 하고 완료한 상태임
- 시민옴부즈만은 비록 사인 간에 발생된 민원이라도 대화로 원만하게 풀기를 기대하며 갈등 조정을 시도 해 보았으나 ○○○가 응하지 않은 등 여전히 갈등이 심한 상황임

□ 결론

- 본 사안은 사인 간의 권리관계 사안으로 고충민원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43조제1항7호 및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8호에 따라 “각하” 처리함.

IV. 참고자료

1. 보도자료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3.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5. 아산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6.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운영 현황



IV. 참고자료

1 보도자료

□ 시민옴부즈만 언론 보도자료

- 충남일보 등 35개 언론사



HOME > 지역소식 > 충남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위촉식 가져

※ 유명환 기자 | ⓒ 승인 2020.12.30 14:47

| 오세현 시장, 시민권익 보호 큰 역할 기대



30일 오세현 아산시장이 이상득 신동택 옴부즈만 위촉식을 갖고 기념사진을 찍고있다

[충남일보 유명환 기자] 아산시는 30일 시민 옴부즈만 위촉식을 갖고 초대 옴부즈만 2명을 위촉했다



아산시, 충남 최초 도입 '시민 옴부즈만' 권익보호 활동에 앞장

기사승인 [2021-02-09 08:58]



시민 옴부즈만 고충민원에 대해 현장 확인 및 경청하는 모습 /제공=아산시

아산/아시아투데이 이신학 기자 = 아산시가 충남 최초로 도입한 '시민 옴부즈만'이 고충민원 조정 등 시민 권익 보호 활동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9일 아산시에 따르면 시민 옴부즈만 제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며 시민이 행정으로 권리침해 및 불편을 겪었다고 여길 때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조사하고 시정 권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고충민원 조사와 처리, 집단 민원 증재 조정 및 감사청구, 시정에 대한 감시와 비위 사정 등에 대한 조치 강구 권고 등이다.

초대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이상득 전 아산시청 공무원, 신동택 전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등 2인은 2년 동안 권한에 속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아산시 충남 최초 '시민 옴부즈만' 도입

✎ 정육한 기자 | ☎ 승인 2021.02.09 13:32

| 시민 권익보호 활동 기대



충남 아산시가 충남 최초로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 1월1일 도입한 '시민 옴부즈만'의 활동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산시, 시민옴부즈만 시민고충 해결 하러 읍면동 찾아간다

✎ 최진규 기자 | ⓒ 승인 2021.02.16 16:28



아산시정 전경

(아산=국제뉴스) 최진규 기자 =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시민의 권익 보호 구제를 위해 오는 3월 3일부터 '읍면동 대상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을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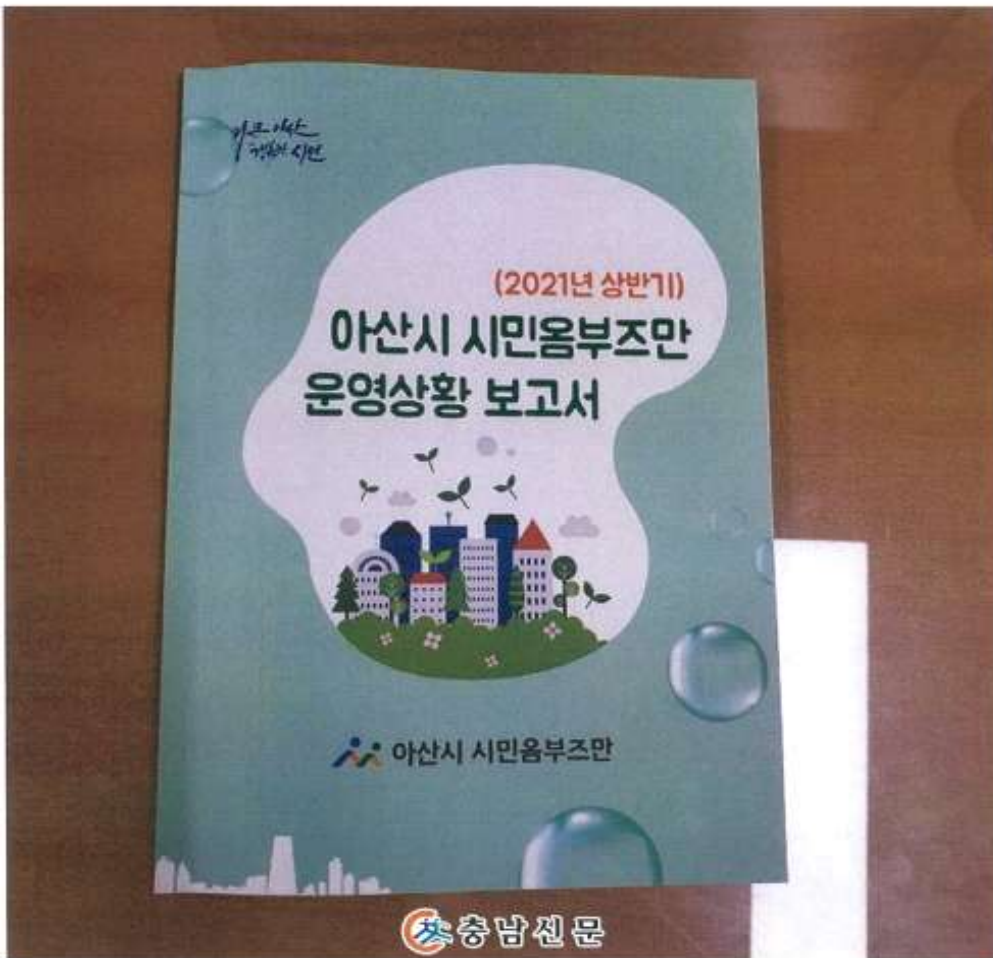
시는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을 통해 3월부터 12월까지 17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시민의 고충을 듣고 풀여가는 민원상담실을 운영한다.

고충민원 현장 상담은 ▲3월 3일 온양4동 ▲3월 17일 영인면 ▲3월 31일 염치읍 ▲4월 14일 온양1동 ▲4월 28일 배방읍에서 실시하며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아산시, '2021년 상반기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 발간

기사입력시간 : 2021/09/04 [19:38:00]

문광복 기자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2021년 상반기 아산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번 책자는 시민들이 행정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억울함이나 답답함을 해소하고 권익구제를 통해 시민들의 행복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의인 시민옴부즈만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중간 보고를 겸해 준비하게 됐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지방옴부즈만) 활성화를 위한 충청권 세미나, 아산시에서 성황리에 개최

기사입력시간 : 2021/09/09 [06:59:00]

안상일 기자



[미디어투데이=안상일 기자] 아산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최하고 아산시 시민옴부즈만에서 주관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지방옴부즈만) 충청권 세미나를 지난 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광역시와 함께 기초지자체인 대전 대덕구, 충북 청주시, 제천시, 영동군, 충남 보령시, 부여군, 공주시 등이 참석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과정의 제도법령 설명 및 운영방식 소개에 이어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아산시를 비롯한 지자체의 설치 운영 현황소개와 질의·답변 및 발전방안 논의 등이 이어졌다.

특히 산동택 아산시 시민옴부즈만 위원은 제도가 시행된 지 1년도 안 된 아산시 시민옴부즈만이 아산시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다양한 홍보로 시민들의 호응을 얻으며 모범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발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827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시민고충처리위원회”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 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제32조에 따라 설치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장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3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④ 결원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34조(활동비 지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제32조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5조(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5조, 제16조제3항, 제17조, 제18조, 제25조 및 제83조의2제1항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6조(사무기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에는 사무기구의 장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37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매년 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38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장 고충민원의 처리

제39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권익위원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권익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신청인은 다른 권익위원회에 대하여도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신청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자로서 권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 ④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권익위원회가 고충민원서류를 보류·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동일한 고충민원의 상호 통보) 신청인이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동일한 고충민원을 둘 이상의 권익위원회에 각각 신청한 경우 각 권익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권익위원회는 상호 협력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하거나 제43조에 따라 이송하여야 한다.

제41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권익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권익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 또는 중단할 수 있다.
- ③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에 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중지 또는 중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조사의 방법) ① 권익위원회는 제41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한 설명요구 또는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 ② 권익위원회의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③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익위원회의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3조(고충민원의 이송 등) ①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3.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4.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6.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7.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8. 행정기관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등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② 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송 또는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의 조사가 착수된 고충민원이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이송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권익위원회에 그 고충민원의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권익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 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

하여 이송한 고충민원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충민원이 이송된 때 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제44조(합의의 권고) 권익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5조(조정) ① 권익위원회는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②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고 권익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은 「민법」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제46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47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48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권익위원회는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하기 전에 그 행정기관등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권익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49조(결정의 통지)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처리결과와 통보 등) ①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권익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권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51조(감사의 의뢰)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위원회는 감사원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2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권익위원회는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53조(공표) 권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2. 제50조제1항에 따른 처리결과
3. 제50조제2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불이행사유

제54조(권익위원회 상호간의 관계) ① 위원회 또는 각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상호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상호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20.05.14 조례 제199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구성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다양한 요구가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여 행정의 신뢰확보와 지역사회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이란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소속기관 등”이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행정기관,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신청인”이란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민원”이란 민원인이 시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을 말한다.
5. “고충민원”이란 소속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제2장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옴부즈만의 위촉 등) ① 옴부즈만의 정수는 3명 이내로 한다.

② 옴부즈만은 최근 2년간 정당의 당원이 아니었던 사람 중,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4조의 옴부즈만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아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6. 법원,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권리관계 등의 조정, 중재, 권고 등의 업무를 2년 이상 전문적으로 하거나 했던 사람
- ③ 읍부즈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정을 도모하고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읍부즈만추천위원회 구성·운영) ① 읍부즈만의 추천을 위하여 읍부즈만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며, 추천이 끝난 후 추천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1. 부시장 및 인사업무 담당 국장
 2.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3. 아산시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외부 인사위원 1명
 4. 아산시 감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감사위원 1명
 5.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 대학교수, 사회단체 대표 중 3명
-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읍부즈만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 ④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추천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직무의 독립성) 읍부즈만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며, 시는 읍부즈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및 보수) ① 읍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읍부즈만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제7조(직무 및 권한) ① 읍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의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
2. 스스로의 발의에 따른 집단민원 중재·조정 및 감사청구
3. 시정에 대한 감시 및 비위의 시정 등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권고
4.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표명
5. 권고, 의견표명 등에 대한 내용의 공표
6.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정·중재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읍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으로 하지 아니한다.
 1. 시의회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
3. 옴부즈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 및 직원의 근무내용에 관한 사항
4. 옴부즈만의 행위에 관한 사항
5. 판결, 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6. 도 및 중앙부처에 민원을 제출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
7.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8.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제8조(근무일 및 근무시간) ① 옴부즈만의 근무일수는 주5일 이내로 한다.

② 옴부즈만의 근무일 및 근무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직무 관할) 옴부즈만이 제7조의 직무 및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
2.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3. 시의 사무 위탁기관

제10조(해촉) 시장은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했을 경우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

제11조(책무 및 비밀유지 의무) 옴부즈만은 시민의 권리이익의 옹호자로서 공정하고도 적절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직을 사임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2조(겸직 등의 금지) ① 옴부즈만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당과 관련된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② 옴부즈만은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13조(제척·기피·회피)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옴부즈만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옴부즈만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옴부즈만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 사정을 한 경우
4. 옴부즈만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옴부즈만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한 경우

②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옴부즈만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읍부즈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3장 고충민원의 처리 등

제14조(고충민원의 신청) 누구든지(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제9조의 직무 관할 대상기관의 사무집행에 관한 사항 및 해당 업무에 관한 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읍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고충민원의 신청절차) ①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읍부즈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소송 및 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신청인과의 관계
5.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

② 읍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고충민원의 조사 등) ① 읍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해당될 때
2. 고충민원을 신청한 사람(이하 “고충민원 신청인”이라 한다)이 고충민원신청 원인이 된 사실과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3. 고충민원 신청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때.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4. 고충민원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또는 그 밖에 조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③ 읍부즈만은 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와 고충민원 처리기간이 60일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붙여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조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시에의 통보) ① 읍부즈만은 고충민원 또는 스스로의 발의(이하 “고충민원 등”이라 한다)로 조사할 경우에는 소속기관 등에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읍부즈만은 고충민원 등의 조사를 위하여 관계인 또는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 현황을 청취할 수 있으며, 실제조사를 위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권고 또는 의견표명) ① 읍부즈만은 고충민원 등의 조사결과에 대해 소속기관 등에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읍부즈만은 고충민원 등의 조사결과에 대해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9조(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존중) 소속기관 등은 제18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0조(조치결과 등 요구) ① 읍부즈만은 제18조에 따라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한 때에는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그 조치결과의 통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결과를 요구받은 경우에 소속기관 등은 15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읍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고충민원 신청인에의 통지) 읍부즈만은 소속기관 등에서 통보받은 고충 민원의 조사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공표) ① 읍부즈만은 제20조에 따른 권고, 의견표명에 따른 통보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읍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권고, 의견표명 또는 통보내용을 공표함에 있어서는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4장 읍부즈만에 대한 협조·지원

제23조(사무기구) ① 시장은 읍부즈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읍부즈만의 직무수행을 위한 조사 및 업무보조를 위하여 전문조사원을 둘 수 있다.

제24조(인력 및 예산지원) 시장은 읍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운영상황의 보고와 공표 등) 읍부즈만은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19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20.07.15 규칙 제777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 옴부즈만) ① 시민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집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당직(黨職)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옴부즈만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옴부즈만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보수 등)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옴부즈만에게는 급여,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근무일) 조례 제8조에 따른 근무일은 주 3일을 기본근무일로 하되 옴부즈만이 근무일을 일시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달의 근무일수 범위에서 조정하여 근무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근무일수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주 5일 이내에서 기본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근무시간) 조례 제8조에 따라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정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제6조(이해관계에 있는 기업 등) 조례 제1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체 또는 단체”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계약관계에 있는 기업체 또는 단체로서 시의 예산집행으로 수익을 얻는 기업체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7조(고충민원 신청서 등) 조례 제14조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에 따르며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신청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 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8조(정당한 사유 등) ① 조례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고충에 관계되는 사실이 1년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알려진 때
2. 천재지변 등에 의하여 신청기간을 경과한 때
3. 고충에 관계되는 사실이 계속되고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는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는 취지에 해당하는 범위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제9조(고충민원 조사제외 등 통보)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사제외 통보서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가 6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지연 통보서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고충민원 조사실시의 통보)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또는 스스로의 발의에 따라 채택된 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경우에는 시의 소속기관 등에 별지 제7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사통보서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신분증명서의 휴대 등) 읍부즈만이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분증명서를 휴대하여 관계인 등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권고, 의견표명 등의 통지) 조례 제18조에 따른 시 소속기관 등에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권고, 의견표명)서에 따른다.

제13조(고충민원 조사결과의 통보) 읍부즈만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고충민원의 조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사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제14조(조치의 통보) ① 읍부즈만으로부터 권고(의견표명) 등을 요구받은 시 소속기관 등에서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권고(의견표명) 조치결과 통보서를 읍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1조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인에게의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사결과 조치통보서에 따른다.

제15조(권고, 의견표명 등의 공표) 조례 제22조에 따른 권고, 의견표명 또는 통보내용의 공표는 공고에 따른다.

제16조(사무기구 운영 등) ① 조례 제23조에 따른 사무기구는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 직급과 인원수의 공무원으로 운영한다.

② 사무기구 직원은 읍부즈만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업무를 보좌한다.

제17조(공인의 사용) ① 읍부즈만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문서, 허가장, 임용장에 별도의 공인을 각인하여 사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읍부즈만 공인의 각인 및 사용은 「아산시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운영상황의 보고) ① 읍부즈만은 조례 제25조에 따라 보고와 공표 등을 할 때에는 매년 12월 말까지의 고충민원 처리사항 및 운영 결과, 그 밖의 사항을 집계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보고 및 공표 하여야 하며 공표할 때는 공고와 함께 시보 또는 시정소식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읍부즈만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및 아산시의회에 특별 보고를 할 수 있다.

부 칙(규칙 제7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정) 2009.05.06 훈령 제304호

(일부개정) 2013.10.07 훈령 제394호

(일부개정) 2017.10.16 훈령 제462호

(전부개정) 2020.06.15 훈령 제51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을 정하고,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아산시 소속기관과 하부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고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경고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아산시와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 아산시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면책”이란 「아산시 자체감사 규칙」에 의한 감사결과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여러 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 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3. “경고 등 처분”이란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주의, 훈계 및 경고(기관 및 부서 경고를 포함한다) 처분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아산시 감사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감찰 포함) 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한다.

제2장 적극행정 면책

제4조(적극행정 면책기준) ① 이 규정에 따른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②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제1항제3호

에서 정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 「아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옴부즈만의 권고·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의 각 호에 위배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면책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면책대상 제외)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제6조(면책제도 안내) 감사주관 책임자는 감사 중 또는 감사 종료시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면책제도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면책심사 신청) ① 감사자 또는 감사주관 책임자는 감사결과 감사대상자에 대하여 면책조치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위원회에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감사대상자가 면책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의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③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를 받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특별히 면책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위원장에게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심사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당해 감사결과 의 처분지시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8조(면책심사 처리) ① 위원장은 제7조에 따른 면책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3호서식으로 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에 따라 처리한다.

- ② 위원회는 면책심사 안건의 심의·의결 시 해당 건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양정을 정한 후 면책심사를 진행한다.

제9조(심사결과 처리) ① 심사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보관하고, 심사결과가 확정된 후 7일 이내에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면책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면책여부를 통보할 때에는 당초 감사결과 처분양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유의사항) ①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업무수행의 동기 및 목적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요구를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써, 감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 ② 국가적인 위기·재난 극복을 위한 정책의 수립 또는 집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처

리 및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관련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관련된 모든 정상(情狀)을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하여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

제3장 공무원 경고 등 처분

제11조(처분대상 및 종류) ① 이 규정에 의한 경고 등 처분은 감사대상기관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② 경고는 기관장(부서장을 포함한다)에게, 훈계와 주의는 기관장 이외의 모든 공무원 등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하며, 경고와 훈계는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12조(처분의 효력) ① 기관장경고 또는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감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시책 추진실적 평가 시 기관장 또는 그 기관이 경고 받은 횟수를 반영하여 재정지원 또는 포상 등 그 밖의 수혜적 조치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13조(처분사유) 감사대상기관 및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경고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1. 모든 복무규정 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지시, 예규, 규칙 등에 위반한 때
2. 직무를 게을리 하여 업무추진이 부실한 때
3. 대민자세의 불량으로 주민으로부터 빈축을 받은 때
4.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기관의 위신을 실추케 한 때
5.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할 때
6. 징계책임이 없는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의 경미한 비위가 발생한 때
7. 기관장이 부당한 지시 또는 정책결정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주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때
8. 그 밖에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때

제14조(처분권자) 경고 등 처분은 위원장이 행한다. 다만, 임용권 등으로 인하여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등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유를 입증할 만한 내용과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처분방법) 경고 등 처분은 처분권자가 별지 제5호서식의 처분장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6조(기록유지) 위원장은 면책결과와 경고 등 처분을 한 때에는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감사원이 운영하는 감사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고하고 변동사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훈령 제511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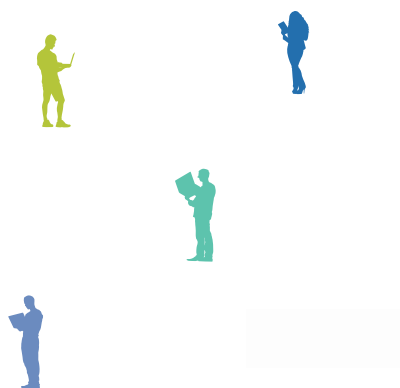
전국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운영 현황

[자료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기획과 ('21.8. 기준)]

연 번	지자체		명칭	구성	임기 (연임제한)	의사 결정
1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7명(상근)	3년(단임)	합의제
2	대구광역시		복지·인권옴부즈만	2명(상근)	2년(1회)	독임제
3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5명(상근)	4년(단임)	합의제
4	경 기 도		옴부즈만	10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5	강 원 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9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6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7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7	전라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9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8	전라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9명(비상근)	4년(1회)	합의제
9	서울 (13)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8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10		동대문구	옴부즈만	2명(비상근)	4년(단임)	독임제
11		강북구	구민참여옴부즈만	5명(비상근)	2년(1회)	독임제
12		도봉구	옴부즈만	4명(비상근)	2년(1회)	독임제
13		은평구	옴부즈만	3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14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5명(비상근)	2년(-)	합의제
15		마포구	옴부즈만	3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16		양천구	옴부즈만	3명(비상근)	2년(1회)	독임제
17		구로구	옴부즈맨	3명(상근)	2년(1회)	합의제
18		금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7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19		동작구	옴부즈만	5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20		관악구	옴부즈맨	3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21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5명(비상근)	2년(1회)	독임제

연 번	지자체		명칭	구성	임기 (연임제한)	의사 결정
22	대구 (2)	동구	옴부즈만	3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23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2명(상근)	4년(1회)	합의제
24	인천	미추홀구	옴부즈만	5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25	광주 (2)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3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26		광산구	시민권익위원회	9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27	대전	대덕구	옴부즈만	2명(비상근)	2년(1회)	독임제
28	울산 (3)	남구	옴부즈만	2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29		북구	옴부즈만	1명(비상근)	2년(1회)	독임제
30		울주군	군민권익위원회	5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31	경기 (16)	수원시	시민가디언	5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32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2명(비상근)	4년(단임)	독임제
33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1명(비상근)	2년(1회)	독임제
34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1명(상근)	2년(1회)	독임제
35		광명시	시민옴부즈만	1명(상근)	2년(1회)	독임제
36		평택시	시민옴부즈만	2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37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3명(상근)	2년(1회)	합의제
38		남양주시	옴부즈만	5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39		시흥시	시민호민관	1명(상근)	4년(단임)	독임제
40		군포시	기업애로 옴부즈만	공석	2년(1회)	합의제
41		용인시	옴부즈만	7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42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3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43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2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44		안성시	시민옴부즈만	4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연 번	지자체		명칭	구성	임기 (연임제한)	의사 결정
45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3명(상근)	2년(1회)	합의제
46		여주시	옴부즈만	재위촉중	4년(단임)	합의제
47	강원 (2)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6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48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7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49	충북 (2)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8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50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8명(비상근)	4년(단임)	독임제
51	충남 (2)	아산시	시민옴부즈만	2명(상근)	2년(1회)	합의제
52		부여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7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53	전북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5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54	전남 (3)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2명(상근)	2년(1회)	독임제
55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5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56		담양군	고충처리위원회	6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57	경북	상주시	옴부즈맨	1명(상근)	2년(1회)	독임제
58	경남	양산시	옴부즈만	3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시민의 편에서 아산과 대화하다 아산시 시민옴부즈만

발행일 2022년 2월

발행처 아산시 시민옴부즈만

편집인 아산시 시민옴부즈만

주 소 우)31512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 아산시청 본관 1.5층

전 화 041-540-2243

홈페이지 www.asan.go.kr

제 작 인디자인 충남 아산시 시민로234번길 12-6 041 543 5571

Copyright © 2022 ASAN-SI

© 본 책자에 담긴 모든 내용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으며 무단복제나 도용을 금합니다.